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이한성 예산분석관
정금연 예산분석관
황진솔 예산분석관
박은형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한서영 예산분석관보

지 원 | 임윤주 행정실무원
최다운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결산 개요 / 5

- 1. 현 황 5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대통령경호처]

I. 결산 개요 / 13

- 1. 현 황 13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

II. 개별 사업 분석 / 19

- 1.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주의 필요 19



[국회]

I. 결산 개요 / 25

1. 현 황	25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9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0

II. 개별 사업 분석 / 31

1.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사업의 집행관리 개선 필요	31
2. 외국법률번역 DB구축 사업 서비스 개선 필요	37

[국가인권위원회]

I. 결산 개요 / 45

1. 현 황	4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48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49

II. 개별 사업 분석 / 50

1. 예비비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50
-----------------------------------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결산 개요 / 59

- 1. 현 황 59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66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8

II. 주요 현안 분석 / 70

- 1. 검찰청 소관 위원회 경비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및 미집행 경비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집행 부적정 70

III. 개별 사업 분석 / 74

- 1. 변호사시험 사업 관련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부적정 74
 - 1-1. 관서운영경비 현금집행의 부적정 75
 - 1-2.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 초과 지출 건에 대한 분할 집행의 부적정 78
- 2.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정시설 확대 필요 83
- 3. 검찰청 직책수행경비 편성·집행상의 문제점 88
- 4.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 타용도 집행의 부적정 및 구호 및 교정비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95



5.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 경비의 적정 집행 필요	99
6.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의 문제점	104
7.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임차료 예산의 편성방식 재검토 필요	108
8. 치료명령 대상자의 심리치료비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112
9. 시설보완 사업의 작업장 신증축 공사 지연 문제	117
10. 해바라기센터의 운영방식 개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22
11.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행사 개최 부적정	127

[법제처]

I. 결산 개요 / 133

1. 현 황	133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7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8

II. 개별 사업 분석 / 139

1. 면밀한 예산 편성을 통한 연례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139
2.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의 연례적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42
3. 비공개 행정 규칙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 결산 개요 / 151

1. 현 황	151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4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5

II. 개별 사업 분석 / 156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156
1-1.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	157
1-2. 수사 지원 위원회 운용 예산 과다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9
2. 당직 실시 없는 예산 편성 부적정 및 당직 근무 규정 마련 필요	161
3. 불용 예산을 활용한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절	164

[감사원]

I. 결산 개요 / 171

1. 현 황	171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5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6



II. 개별 사업 분석 / 177

1. 심사청구 법정 결정기간 준수 필요 177
2.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 징수 필요 184
3. 해외 감사기구 관리자 연수사업 집행방식 개선 필요 188

[대법원]

I. 결산 개요 / 195

1. 현 황 19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2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3

II. 개별 사업 분석 / 204

1.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및
사업 축소 필요 204
2. 상근직 조정위원 보수의 일반수용비 집행 문제 개선 필요 211
3. 민간출연금 수입 증대를 위한 공탁금 통합 운용 시스템 고려 필요 216
4.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등 222
5. 재판활동지원비(특정업무경비) 집행관리 철저 필요 226
6.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231



[헌법재판소]

I. 결산 개요 / 239

- 1. 현 황 239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2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3

II. 개별 사업 분석 / 244

- 1.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244
- 2.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예산의 연례적 불용 문제 247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이며, 6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4%인 6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7	297	297	675	665	10	-	98.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31억 3,200만원이며, 이 중 90.5%인 84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88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5,570	93,132	93,132	84,251	-	8,881	90.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은 6,974억 2,800만원, 부채는 12억 4,400만원으로 순자산은 6,961억 8,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억 400만원, 일반유형자산 6,928억 9,300만원, 무형자산 35억 4,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억 8,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821억 8,600만원(35.4%)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자산재평가, 집기, 비품 등 각종 유형자산 신규 취득 등으로 1,889억 1,700만원 증가하고 감가상각 등으로 44억 9,700만원 감소하여 1,844억 2,000만원 순증하였다. 이외에 유동자산 6억 1,500만원 순감, 무형자산 21억 8,500만원 순감, 기타비유동자산 5억 6,500만원 순증 되었다.

부채는 유동부채 900만원, 장기충당부채 12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800만원(7.6%) 증가하였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2,800만원 증가 및 건물 선수임대료 4,0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산	697,428	515,242	182,186	35.4
Ⅰ. 유동자산	304	919	△615	△66.9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692,893	508,473	184,420	36.3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3,545	5,730	△2,185	△38.1
Ⅵ. 기타 비유동자산	686	121	565	466.9
부채 합계	1,244	1,156	88	7.6
Ⅰ. 유동부채	9	50	△40	△82.0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1,235	1,107	128	11.6
Ⅳ. 기타 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696,184	514,086	182,098	35.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33억 7,600만원 감소(19.8%)한 948억 100만원이다.

프로그램순원가는 ‘기관운영프로그램’에서 전기 대비 29억 8,900만원 감소, ‘국정지원프로그램’에서 전기 대비 219억 9,000만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총 249억 7,900만원 감소한 955억 5,0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이 전기 대비 16억 200만원 감소한 것은 자산 등재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8,300만원 증가하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손실환입 등이 16억 8,5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33억 7,600만원(19.8%) 감소한 948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교환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95,550	120,529	△24,979	△20.7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750	2,352	△1,602	△68.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4,801	118,177	△23,376	△19.8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4,801	118,177	△23,376	△19.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2회계연도 기말 순자산은 기초 대비 1,820억 9,800만원 증가(35.4%)한 6,961억 8,400만원으로 2022년 기초 순자산 5,140억 8,6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948억 100만원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2,275억 6,5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조정항목에서 493억 3,3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총 2,275억 6,500만원이며 재원 조달은 국고수입(세출 결산액) 842억 5,100만원과 기타재원조달액(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8억 6,800만원 및 정부내자산수증 등 1,391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고, 재원 이전은 국고이전지출(세입 결산액) 6억 6,500만원과 물품관리전환 20억 7,600만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조정항목은 493억 3,300만원으로 토지재평가이익 등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이 전기 대비 543억 8,800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기초순자산	514,086	432,861	81,225	18.8
II.재정운영결과	94,801	118,177	△23,376	△19.8
III.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7,565	95,680	131,885	137.8
IV.조정항목	49,333	103,721	△54,388	△52.4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696,184	514,086	182,098	35.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2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① **기본경비 사업**과 ② **국정운영관리 사업**이 있다.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관람객 수송차량 임차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임차료 6,000만원 감액(206억 6,600만원→206억 600만원)되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에서는 기념품 제고 및 청와대 관람객 예산인원 등을 감안하여 기념품대 가격에서 3억원이 감액되고, 청와대의 임기말 정책연구 수요가 많지 않고 각 부처를 통한 정책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억원이 감액되어 총 5억원이 감액(48억 5,200만원→43억 5,200만원) 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있으며, 최근 세입수납 확대 실적을 감안하여 9,900만원 증액되었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500만원으로, 3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억 3,400만원을 수납(수납률 100.0%)하였고, 불납결손처리 및 미수납은 없었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5	75	75	334	334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65억 7,500만원이며, 이 중 97.4%인 1,038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6,996	96,404	106,575	103,821	149	2,605	97.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전년 대비 1,622억 4,600만원이 증가한 7,339억 6,7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1억 9,000만원 감소, 기타비유동자산이 1억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로 일반유형자산이 1,625억 3,400만원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한편 부채는 없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1,622억 4,600만원이 증가한 7,339억 6,7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116억 8,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정부영결과는 3,101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900만원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733,967	571,721	162,246	28.4
Ⅰ. 유동자산	25	24	1	4.2
Ⅱ. 투자자산	433	433	-	-
Ⅲ. 일반유형자산	729,763	567,229	162,534	28.7
Ⅳ. 무형자산	3,702	3,892	△190	△4.9
Ⅴ. 기타비유동자산	43	143	△100	△69.9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733,967	571,721	162,246	28.4
Ⅰ. 기본순자산	311,683	311,683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12,157	△50,708	162,865	△321.2
Ⅲ. 순자산 조정	310,127	310,746	△619	△0.2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022억 4,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46억 6,800만원이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4억 2,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0억 6,900만원(9.8%) 감소한 1,022억 4,700만원이며, 이는 비배분수익이 1억원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순원가가 112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순원가가 111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047억원으로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은 대통령경호처 운영 프로그램(721억원)과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프로그램(32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배분수익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1억원, 기타수익 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4,668	115,837	△11,169	△9.6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4,668	115,837	△11,169	△9.6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2,421	2,521	△100	△4.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02,247	113,316	△11,069	△9.8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02,247	113,316	△11,069	△9.8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717억 2,100만원이고, 기말순 자산은 7,339억 6,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622억 4,600만원(28.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2,651억원, 조정항목이 △6억원 발생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022억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696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71,721	512,154	59,567	11.6
Ⅱ. 재정운영결과	102,247	113,316	△11,069	△9.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65,112	94,277	170,835	181.2
Ⅳ. 조정항목	△619	78,605	△79,224	△100.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733,967	571,721	162,246	28.4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22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행정차량 임차료**, ② **특정업무경비** 등이 있다.

총액인건비비대상 경비의 행정차량 임차료는 행정업무의 소요의 증가로 6,400만원이 증액(2억 1,200만원 → 2억 7,600만원)되었고, 특정업무경비는 경호대상자의 증가 및 경호행사 증가에 따라 9,000만원이 증액(22억 4,800만원 → 23억 3,8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는 **특수운전훈련장 건립 사업**이 있다. 특수운전훈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운전훈련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 외국 국가원수, 기타 국내외 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 경호·경비·안전업무 총괄 및 청와대 방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신규 AI과 학경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역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주의 필요

가. 현 황

경호안전교육원 운영¹⁾ 사업은 경호안전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이며, 2022년 예산현액 20억 3,200만원 중 19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경호안전 교육원 운영	2,489	2,489	-	△457	2,032	1,987	-	46	2,56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통령 경호처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증액된 예산을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신규 AI과 학경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역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231-304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은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20억 5,400만원에서 24억 8,900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그중 건설비의 경우 외벽노후화에 따른 수리와 내부 시설 개선 등 훈련교장 시설보수를 목적으로 2억 2700만원 증액되었다.

[2022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		2022 예산	증감률	사 유
	당초	추경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054	2,054	2,489	21.2	
인건비	25	25	25	-	
운영비	1,541	1,541	1,480	△4.0	
연구용역비	40	40	50	25.0	미래 경호환경대비 경호안전교육원 연구비
건설비	327	327	554	69.5	각종 훈련교장 시설보수비
유형자산	121	121	381	214.1	경호교육훈련 장비 및 교육원 물품비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당초 계획하였던 경호안전교육원 훈련교장 시설보수를 위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였으며, 경호장비의 완성도를 확보하고자 경호장비 시설개선으로 내역변경하여 AI과학경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2022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 내역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2.6.21.)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1231-304)	420-03	457	경호장비 시설개선 (1231-302)	420-03	AI과학경호 시스템 구축 부족재원 마련

자료: 대통령 경호처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AI과학경호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내역변경을 하여 집행한 것은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과학경호시설 구축에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에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훈련교장을 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심의 및 확정 시 필요성을 인정받아 편성된 공사비를 경호장비 시설개선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AI과학경호시스템 구축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운영사업의 경우 보안상을 사유로 자세한 내역이 비공개인 구조로, 한정된 정보로 인해 세목조정을 통해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는 AI과학경호시스템과 같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소요가 있을 경우 차년도에 예산심의를 받은 후에 해당 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며, 국회의 심의를 받은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1억 6,300만원이며, 40억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8%인 37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2,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63	4,163	4,163	4,015	3,765	226	25	93.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2022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204억 9,700만원이며, 이 중 91.0%인 6,554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6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99,809	699,809	720,497	655,471	9,422	55,604	91.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회의 자산은 5조 9,974억 8,400만원, 부채는 407억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9,567억 7,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9억 4,3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조 9,318억 2,500만원, 무형자산 615억 1,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억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18억 8,600만원(0.4%)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자산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07억 6,0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스템구축 등에 따른 무형자산 102억 8,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28억 4,000만원, 장기차입부채 278억 5,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7억 8,900만원(40.8%)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00억 4,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국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997,484	5,975,598	21,886	0.4
Ⅰ. 유동자산	3,943	3,035	908	29.9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5,931,825	5,921,065	10,760	0.2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61,512	51,228	10,284	20.1
Ⅵ. 기타비유동자산	205	270	△65	△24.1
부 채	40,705	28,916	11,789	40.8
Ⅰ. 유동부채	12,840	10,194	2,646	26.0
Ⅱ. 장기차입부채	27,850	17,810	10,040	56.4
Ⅲ. 장기충당부채	16	419	△403	△96.2
Ⅳ. 기타비유동부채	-	494	△494	△100.0
순 자 산	5,956,779	5,946,682	10,097	0.2 %

자료: 국회

국회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073억 8,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2,500억 3,000만원, 관리운영비 4,623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9억 8,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35억 4,900만원(5.0%) 증가한 7,073억 8,900만원이며, 이는 기타수익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341억 3,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별 순원가는 의정지원활동(914억 3,500만원)과 국회사무처운영(1,175억 600만원), 국회도서관운영(340억 9,600만원), 예산정책처운영(42억 2,300만원), 입법조사처운영(27억 6,900만원)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848억 2,500만원과 기본경비 775억 1,50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국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250,030	262,144	△12,114	△4.6
II. 관리운영비	462,340	450,811	11,529	2.6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4,981	39,114	△34,133	△87.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07,389	673,840	33,549	5.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07,389	673,840	33,549	5.0

자료: 국회

국회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조 9,466억 8,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9,567억 7,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0억 9,700만원(0.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7,073억 8,9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094억 2,8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80억 5,9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7,131억 9,2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7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80억 5,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A)	2021 회계연도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946,682	4,898,368	1,048,314	21.4
Ⅱ. 재정운영결과	707,389	673,840	33,549	5.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09,428	692,091	17,337	2.5
Ⅳ. 조정항목	8,059	1,030,063	△1,022,004	△99.2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5,956,779	5,946,682	10,097	0.2

자료: 국회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고성연수원 산책로 개선**, ② **국회계시판 디지털화** 등이 있다.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고성연수원 산책로 개선 사업 1억 4,000만원(1억 4,000만원 → 0원), 국회계시판 디지털화 사업 1억 4,000만원(1억 4,000만원 → 0원)이 각각 감액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차세대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② **국회 방문 국민 편의성 제고 사업** 등이 있다.

차세대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사업은 국회의원실, 법제실, 위원회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맞춤형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4억 1,800만원 증액(0원 → 4억 1,800만원)되었고, 국회 방문 국민 편의성 제고 사업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1억 7,500만원 → 2억 4,000만원) 및 주차관제시스템 개선(0원 → 3억 1,500만원)에 3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²⁾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경상경비**, ② **인건비** 등이 있다.

공공부문 고통부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3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편성 기준이 6일에서 5일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5억원이 절감되어 총 4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³⁾

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5.

2022년도 국회는 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②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국회 구현, ③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④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청사시설 보수·보강 내역사업은 공사 및 납품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례적인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추진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도서관의 외국법률번역 DB는 번역된 법률의 정보 업데이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의 최신성·유용성이 미흡하고 사용 편의성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¹⁾은 국회 청사의 시설물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회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40억 6,400만원 중 39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7,700만원을 이월했으며 26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42,594	42,520	1,404	472 △332	44,064	39,191	2,177	2,696	42,73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 청사유지 및 관리사업은 집행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사시설 보수·보강 내역사업은 공사 및 납품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례적인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추진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코드: 일반회계 2033-300

2022년도 청사시설 보수·보강 내역사업²⁾을 통해 추진된 국회청사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사업은 총 15건(전년도 이월사업 3건 포함)³⁾이며, 조명교체 등 단순 설비 교체를 제외하면 시설보수 6건 중 5건이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로 인해 전년도 이월액 13억 200만원을 포함한 당해연도 예산현액 99억 4,500만원 중 21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률은 63.4%이다.

[2022년 청사시설 보수·보강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연	건 명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1	국회청사 공기조화기 교체	759(310)	674	-	85
	본관·부속건물 수배전반설비교체	2,276(947)	1,696	-	583
	노후설비 개보수	986(45)	849	137	-
2022	국회건축물 석면제거	308	308	-	-
	국회도서관 냉난방 배관교체	1,000	956	-	44
	의원동산 출입구 경사로설치	200	172	-	28
	부산도서관 경관조명 설치	549	452	-	91
	본회의장 의원발언대 및 바닥 회전장치 설치	157	86	-	71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교체	400	35	303	62
	의정관 소방설비 교체	280	-	245	35
	국회도서관 소방설비 개선공사	130	113	-	17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 설치	1,659	-	1,364	296
	국회 경내 완속충전기 설치	113	-	100	13
	LED 조명기구 교체	161	148	-	13
	노후시설 개보수	968	822	-	147
합 계		9,945	6,311	2,148	1,486

자료: 국회

2)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청사유지 및 관리, 청사시설 보수·보강, 노후비품 등 교체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3) 노후설비 개보수 공사 건은 대부분 1개월 내로 이루어지는 다수의 공사를 포함하나 기관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한 건으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과다한 예산액 이월 문제는 당해연도만의 특징이 아니며, 지난 5년 간 유사한 수준의 이월(13억원 ~ 26억원)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국회청사 보수·보강 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8	5,424	145	5,569	2,895	1,713	961	51.9
2019	5,222	1,713	6,935	4,386	1,921	628	63.2
2020	10,051	1,921	11,972	8,657	2,611	704	72.3
2021	7,594	2,611	10,205	7,801	1,302	1,102	76.4
2022	8,644	1,302	9,945	6,311	2,148	1,486	63.4

자료: 국회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하여 연내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설물 보수사업의 특성상 입찰공고부터 공사완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건의 보수·보강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계획변경·유찰 등으로 일부 공사에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월된 사업량이 많으면 이월된 공사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당해연도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다시 과다한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공사 건별 집행기간을 확인해보면, 단순 설비교체가 아닌 공사 건의 경우 2022년 1분기까지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졌고, 당해연도에 계획된 공사는 2분기 말~3분기에 착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면 절대적 공기가 부족하여 또 다른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국회청사 보수·보강 공사 건별 추진기간]

편성년도	건 명	사업기간 ¹⁾
2021	국회청사 공기조화기 교체	2022.06.~2022.12.
	본관·부속건물 수배전반설비교체	2022.01.~2022.12.
	노후설비 개보수(내역 건별 상이)	2022.01.~2023.01.
2022	국회건축물 석면제거	2022.03.~2022.05.
	국회도서관 냉난방 배관교체	2022.08.~2022.12.
	의원동산 출입구 경사로설치	2022.04.~2022.07.
	부산도서관 경관조명 설치	2022.09.~2022.10.
	본회의장 의원발언대 및 바닥 회전장치 설치	2022.02.~2022.03.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교체	2022.10.~2023.04.
	의정관 소방설비 교체	2022.11.~2023.02.
	국회도서관 소방설비 개선공사	2022.10.~2022.12.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 설치	2022.10.~2023.03.
	국회 경내 완속충전기 설치	2022.12.~2023.04.
	LED조명기구 교체	2022.10.~2022.12.

주: 1) 입찰공고일 ~ 용역종료일

자료: 국회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연내 집행가능성과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사 보수·보강 사업의 연례적 이월과다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상치 못한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조정 시 면밀한 계획하에 시행함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일반연구비로 전용 후 그 부족분을 다른 세부사업에서 다시 이용하여 대체하는 집행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청사유지 및 관리 내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정(2022.8.9.)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가 발생⁴⁾하자 이를 위한 용역을

4)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해야 하며, 2021년 8월 9일에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서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시하기 위해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에 편성된 예산 중 2억 200만원을 전용하였다.

이후 이로 인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며, 재원 충당을 위해 인건비 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을 이용하고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사업의 일반수용비와 관리용역비에서 각각 5,000만원, 5,6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다.

[2022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사업의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4.8)	국회청사 유지및관리 (20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02	국회청사 유지및관리 (2033-300)	일반연구비 (260-01)
이용 (1222)	인건비 (7011-150)	보수 (110-01)	140	국회청사 유지및관리 (20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세목 조정 (1222)	국회청사 유지및관리 (2033-300)	일반수용비 (210-01)	50	국회청사 유지및관리 (2033-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관리용역비 (210-15)	56		

자료: 국회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82억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당해연도 4월에 2억 200만원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12월에 이용으로 1억 4,000만원, 세목조정으로 1억 600만원이 증액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비목의 예산현액은 83억 2,500만원이 되었으며, 500만원을 불용하고 8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281	-	246 △202	8,325	8,320	5

자료: 국회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이전년도 결산내역을 감안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용하여 용역을 실시했으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6~7억원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 후 다른 비목의 집행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집행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전년도에 불용했던 비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일반연구비로 전용한 것은 면밀한 계획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3년간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210-02)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7,997	7,240	757	8,133	7,499	634	8,281	8,320	5

자료: 국회

더불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증액 조정 역시 동일 사업에서 총 26억 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러한 불용 규모를 알 수 있던 연말에 예산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부족분을 인건비 사업에서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추가 소요의 발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예산조정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연내 집행과 관련한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 하에 조정함으로써 감액 조정한 세목의 부족재원을 다른 단위사업 예산의 이용을 통해 충당하는 집행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국법률 번역·공개사업은 법률정보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국회의원실 등의 번역 요청에 대해 외국법률을 번역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억 2,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년도 법률정보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률정보지원	683	683	-	10	693	689	-	4	683
외국법률 번역·공개	521	521	-	-	521	521	-	-	52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도서관의 외국법률번역 DB는 번역된 법률의 정보 업데이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의 최신성·유용성이 미흡하고 사용 편의성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건에 대하여 번역회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내·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는 선정번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외국법률 번역자료와 외부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함께 DB화하여, 이를 국회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고 있다²⁾.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코드: 일반회계 3032-301

[최근 4년간 연도별 번역법률 회답내역 및 DB구축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법률번역 ¹⁾	184	212	202	208
법률번역 DB구축 ²⁾	812	814	807	803

주: 1) 기존 번역을 이용한 제공(회답)건수는 제외함.

2) 외국법률번역DB에서는 국회도서관 외 정부기관, 연구기관에서 시행한 번역본도 제공함.

자료: 국회

그런데,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 직원³⁾을 대상으로 한 외국법률번역 DB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이용 경험률 역시 50.4%에 불과하다. 더불어 종합만족도가 74.7점으로 매년 70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적시성, 정보의 질 그리고 종합적인 만족도 모두 전년도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 간 외국법률번역DB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률	만족도(/100)			
			적시성	정보내용(질)	편의성	종합
2019	52.3	25.0	74.6	74.2	76.9	75.2
2020	55.8	46.2	71.6	74.3	76.9	74.3
2021	46.9	46.7	74.6	77.2	75.9	75.9
2022	47.3	50.4	73.4	74.2	76.6	74.7

자료: 국회

2) 해당 DB의 이용자 수는 2019년 1월 대국민서비스로 전환하면서 4만 3,109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22년에는 4만 659명으로 감소하였다.

3)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각년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설문 조사의 대상은 현직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 상임위원회 직원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 DB의 핵심요인인⁴⁾ 데이터 품질의 측면에서 최신성과 상호연계성이 미흡하여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국법률번역 DB에서 제공되는 번역정보가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2023년 현재까지 DB화된 법률번역본 1만 3,761개 가운데 2021년 이후의 제·개정 내역을 바탕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건은 413건으로 전체 자료 대비 3.0% 수준이다. 매년 개정 내역을 확인하여 새롭게 번역할 수 있는 법률 수에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DB의 특성 상 타 기관의 번역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최신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외국법률번역본의 기준 연도]

(단위: 건)

구분	소장번역본의 대상법률 제·개정 연도						합계
	2000년 이전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2023.6	
외국법률번역 DB	4,995	2,525	2,258	1,839	1,731	413	13,761

자료: 국회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일례로 미국의 상표법(Trademark Act of 1946)의 경우, 유사 DB인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⁵⁾에서는 2023년 6월 확인 결과 2020년도에 최종개정된 법률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회 외국법률번역 DB에서는 2008년 개정된 법률에 대한 특허청의 2012년도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 등 일부는 법제처에서 2023년에 실시한 번역본을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2017년도에 동 센터에서 공개한 번역본이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DB와의 연계 및 데이터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행정안전부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공공데이터 DB의 핵심으로 보며, 이 때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5) 법제처는 2010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를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현재 총 14,617건의 외국법률 원본, 영문본,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DB별 번역본 대상법률 제·개정일 및 번역본 작성기준일자 비교 예시]

법률명		번역대상법률 개정년도		번역본 작성년도	
		(국회)외국 법률번역DB	(법제처)세계 법제정보센터	(국회)외국 법률번역DB	(법제처)세계 법제정보센터
미 국	상표법 (Trademark Act of 1946)	2008	2020	2012	2023
독 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2011	2022	2013	2022
중 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2004	2016	2017	2023

자료: 국회 및 법제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됨

더불어 외국법률번역 DB에서는 이전에 등록되어있는 번역본의 원문 법률의 제·개정 여부 및 제·개정일과 내용 등의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번역된 법률이 최근에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정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최신 입법례 자료 및 외국입법동향 보고서 등이 DB와 연계되지 않고, 초기 DB검색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낮다는 것 역시 해당 DB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DB별 배너·검색 구성 비교]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 DB'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 <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 <https://world.moleg.go.kr>(최종검색일:2023.06.30.)

또한 국회법률도서관에서는 연평균 30개의 최신 입법례 보고서와 외국입법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외국법률번역 DB와 별도 배너에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번역본과 연계되어 제공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경우 법령번역본과 원문, 관련 연구보고서, 최근입법동향 등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과 비교된다. 해당 DB는 초기 화면에서 번역법률을 국가별, 주제별로 시각화하고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는 반면 외국법률번역 DB는 구축 초기형태의 검색화면만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DB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국회도서관은 이에 대하여 현행법을 완역하고 있는지를 중시하여 정확성이 확인된 법률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자료의 최신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금년도 5월 법제처와 MOU를 체결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국법률번역 DB는 국회에서 완역 및 검수한 외국법률 번역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넘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 및 국민들이 외국법률의 최신 내역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국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기관들의 외국법률 번역본을 한 데 모아 제공하는 DB로서 의의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타 기관들에서 제공한 최신 번역본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요 법률의 최근 개정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번역법률의 최신정보 업데이트 및 관련 DB와의 연계성 강화, 검색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00만원이며, 9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인 98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	12	12	9.8	9.8	-	-	1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4억 6,700만원이며, 이 중 94.3%인 391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9,336	39,024	41,467 ¹⁾	39,016	-	2,362	94.3

주: 1) 전년도 이월액 (406)+예비비(2,037)

1.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자산은 229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무형자산이 전년대비 1억 2,500만원 감소로 큰폭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일반유형 자산이 전년대비 3억 2,600만원 증가하고 유동부채 3,400만원이 순감한데 기인한 것이다.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2,965	22,688	277	1.2
Ⅰ. 유동자산	10	-	10	100.0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17,792	17,466	326	1.8
Ⅳ. 무형자산	2,232	2,357	△125	△5.6
Ⅴ. 기타비유동자산	2,931	2,866	65	2.2
부 채	-	34	△34	△100.0
Ⅰ. 유동부채	-	34	△34	△100.0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자산-부채)	22,965	22,654	311	1.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2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395억 5,100만원보다 28억 3,400만원 증가(7.2%)하였는데 이는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등 프로그램순원가가 128억 3,4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가 28억 3,400만원 증가(7.2%)하였기 때문이다. 도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423억 8,500만원으로 프로그램수행 과정에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배분수익에서만 전기 대비 100만원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2,385	39,551	2,834	7.2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2	1	1	10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2,383	39,549	2,834	7.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42,38	39,549	2,834	7.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2회계연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말순자산은 229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억원 증가(1.4%)하였다. 2022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제재금 700만원, 기타비교환수익 1,100만원, 무상이전수입 114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원조달 항목 중 증가 요인으로 국고수입 31억 2400만원, 기타자원조달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이전 3,600만원 감소를 포함하여 전기 대비 76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다. 조정항목은 전기대비 35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산재평가이익이 35억 4,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2,654	8,270	14,384	174
II. 재정운영결과	42,383	39,549	2,834	7.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727	50,423	△7,696	△15.2
IV. 조정항목	△34	3,511	△3,545	△10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2,965	22,654	311	1.3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이 있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 중복됨을 이유로 5,000만원 (12억 8,400만원 → 12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속한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조사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인권침해·차별예방 활동 강화 및 적극적 피해 구제, ②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보장체계의 지속적 보완, ③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④ 인권교육원 설립(2024년 건립예정) 등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국가 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⑤ 지역 주민의 인권의식 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지역 인권문화 조성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사업은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실제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및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예비비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가. 현 황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사업¹⁾은 군인권 보호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군인권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운영되며,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2년 예산현액 21억 8,700만원 중 1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취약분야 인권개선	1,234	1,186	-	-	2,037	3,223	2,541	-	682	1,455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157	150	-	-	2,037	2,187	1,589	-	598	30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관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권 보호관’을 설치²⁾하는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3-301의 내역사업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법률개정안」 ‘21.12.9. 국회의결, 2022.1.4. 공포, 2022.7.1.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군 문화 및 문제에 대한 외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취약 분야 인권개선 사업 내 예비비³⁾를 배정받아 추진하였다.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항 목	내 역
인건비(110-01)	15명에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110-05)	
일반수용비(210-01)	군부대 방문조사 등
임차료(210-07)	청사임차료, 군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210-09)	군인권보호국 운영
일반용역비(210-04)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군인권 캠페인 등
기타운영비(210-06)	군인권보호국과 운영비
국내여비(220-01)	군부대 방문조사 여비 등
사업추진비(240-01)	군부대 방문조사 평가지표 개발 등
관서업무추진비(240-02)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직책수행경비(250-02)	고위공무원 수행경비 등
특정업무경비(250-03)	군인권 조사활동비
자산취득비(430-01)	사무공간 조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실제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및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라 15명의 직제내인원 증원을 목적으로 인건비 5억 8,000만원과 연가보상비 6,000만원을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내역사업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 3) 2022년 정부예산 제출 이후인 2021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되어 (예측가능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군인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급성)과 2022회계연도 초 시점에서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소요 충당의 어려움(보충성)을 사유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7월 11일에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사업 내 예비비로 편성된 인건비 5억 8,100만원을 전액 불용하고, 동일한 예산액 만큼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이는 사실상 추가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 및 배정받은 예비비가 불필요하였으며, 본예산 인건비 사업으로 배정되었어야 할 인건비가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내 인건비로 잘못 배정된 것을 보여준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조성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인건비(110-01)	-	-	581	581	-	-	581
연가보상비(110-05)	-	-	6	6	-	-	6
일반수용비(210-01)	74	-	1,047	1,121	1,073	95.7	48
임차료(210-07)	-	△11	18	7	7	100	11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62	73	72	98.6	1
일반용역비(210-04)	-	50	124	174	169	97.1	5
기타운영비(210-06)	-	-	2	2	2	100	-
국내여비(220-01)	2	-	14	16	16	100	-
사업추진비(240-01)	-	-	8	8	8	10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8	8	8	100	-
직책수행경비(250-02)	-	-	10	10	10	100	-
특정업무경비(250-03)	-	-	19	19	19	100	-
자산취득비(430-01)	-	-	138	138	137	99.3	1
업무추진비(240-01)	4	-	-	4	4	100	-
일반연구비(260-01)	70	-	-	70	64	91.4	6
합 계	150	61	2,037	2,237	1,589	72.7	65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우선, 직제상 추가로 채용 예정이었던 15명에 대해서 인건비 목적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본예산 인건비 세부사업(1001-100)을 통하여 집행하였다.

「국가재정법」 제22조⁴⁾에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에서는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 즉,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국회의 사후적 통제만 받으므로, 법과 지침에 따라 신청 시에 사업계획과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비 대신 본예산 인건비에서 15명 채용을 전액 집행하고 배정받은 예비비 전액을 불용하였다는 것은, 추가적 예산소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 편성된 예산보다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배정받는 예비비 목적 중 하나인 보충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직제상 추가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인건비 세부사업(1001-100)으로 배정받지 않고, 취약분야 인권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사업으로 배정받아 집행이 제약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각종 수당⁶⁾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⁷⁾.

4)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5)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6)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7) 인건비 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이는 인건비 사업으로 편성되어야만 표준인사시스템, 디브레인, 금융결제원, 국고수탁은행과 연계처리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예비비를 인건비 사업으로 별도로 배정받지 않고,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사업으로 다른 비목과 함께 한번에 배정받았다. 이와 같이 인건비를 사업 내에 있는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비목으로 배정받을 경우, 인사시스템 및 급여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인건비 자체가 물리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인권위원회는 예비비 편성 단계에서 실제 예산소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비비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적합한 사업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또한 예비비 배정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4,773억원이며, 1조 4,2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9%인 1조 4,131억원을 수납하고 150억원을 미수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55,756	1,355,756	1,355,756	1,309,931	1,295,093	14,837	1	98.9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1	121,574	121,574	118,241	118,032	209	-	99.8
합계	1,477,327	1,477,330	1,477,330	1,428,172	1,413,126	15,045	1	98.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2,673억원이며, 이 중 98.0%인 4조 1,836억원을 지출하고, 6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8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19,284	4,107,675	4,142,500	4,073,951	6,860	61,688	98.3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1	121,574	124,793	109,684	-	15,109	87.9
합계	4,240,855	4,229,249	4,267,292	4,183,635	6,860	76,798	98.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001억원이며, 1,16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1%인 1,138억원을 수납하고 22억원을 미수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114	100,114	100,114	115,953	113,783	2,170	-	98.1

자료: 법무부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001억원이며, 이 중 113.7%인 1,138억원을 지출하고, 43억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114	100,114	100,114	113,783	-	4,293	113.7

자료: 법무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95억원($\Delta 4.2\%$)이 감소한 1조 3,65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30억원(1.7%)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337,156	1,420,468	1,420,468	1,359,572	△60,896	22,416
기금	4,824	3,998	3,998	5,433	1,435	609
합계	1,341,981	1,424,466	1,424,466	1,365,005	△59,461	23,02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2022회계연도 법무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14억원($\Delta 1.0\%$)이 감소한 4조 1,213억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321억원(6.0%)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788,123	4,091,958	4,080,098	4,042,935	△37,163	254,812
기금	101,076	82,689	82,689	78,403	△4,286	△22,673
합계	3,889,199	4,174,647	4,162,787	4,121,339	△41,448	232,14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법무부의 자산은 12조 6,456억 4,500만원, 부채는 1,624억 8,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4,831억 6,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965억 8,700만원, 투자자산 115억원, 일반유형자산 12조 3,008억 5,900만원, 무형자산 937억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509억 2,800만원(1.2%) 증가하였다. 이는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선급금 증가 등 유동자산 626억 2,400만원 증가, 국유재산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565억 3,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37억 3,200만원, 장기차입부채 351억 4,500만원, 장기충당부채 936억 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9억 1,600만원(1.8%) 증가하였다. 이는 소송관련 충당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64억 2,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2,645,645	12,494,717	150,928	1.2
Ⅰ. 유동자산	196,587	133,963	62,624	46.7
Ⅱ. 투자자산	11,500	9,000	2,500	27.8
Ⅲ. 일반유형자산	12,300,859	12,244,329	56,530	0.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93,770	66,418	27,352	41.2
Ⅵ. 기타비유동자산	42,929	41,006	1,923	4.7
부 채	162,482	159,566	2,916	1.8
Ⅰ. 유동부채	33,732	34,909	△1,177	△3.4
Ⅱ. 장기차입부채	35,145	47,473	△12,328	△26.0
Ⅲ. 장기충당부채	93,605	77,184	16,421	21.3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12,483,163	12,335,150	148,013	1.2
Ⅰ. 기본순자산	5,685,180	5,685,180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188,866	1,078,017	110,849	10.3
Ⅲ. 순자산 조정	5,609,117	5,571,953	37,164	0.7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조 4,233억 3,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5,509억 5,100만원, 관리운영비 3조 166억 900만원, 비배분비용 26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04억 3,600만원, 비배분수익 764억 7,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23억 9,900만원(△1.4%) 감소한 4조 4,233억 3,100만원이며, 이는 국유재산 재평가손실 감소 등 프로그램순원가가 1,798억 2,500만원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교정활동 프로그램(4,813억 8,500만원)과 검찰활동 프로그램(4,033억 4,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조 4,339억 8,100만원과 경비 5,826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25억 400만원과 이자비용 1억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480,515	1,660,340	△179,825	△10.8
가. 프로그램 총원가	1,550,951	1,718,720	△167,769	△9.8
나. 프로그램 수익	70,436	58,380	12,056	20.7
II. 관리운영비	3,016,609	3,033,703	△17,094	△0.6
III. 비배분비용	2,679	17,771	△15,092	△84.9
IV. 비배분수익	76,471	226,084	△149,613	△66.2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423,331	4,485,730	△62,399	△1.4
VI. 비교환수익 등	-	58	△58	△100.0
VII. 재정운영결과(V-VI)	4,423,331	4,485,672	△62,341	△1.4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12조 3,351억 5,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2조 4,831억 6,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480억 1,3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4조 4,233억 3,100만원이나,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조 5,341억 8,000만원, 조정항목이 371억 6,400만원으로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5조 9,630억 5,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4,288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71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2,335,150	10,623,242	1,711,908	16.1
Ⅱ. 재정운영결과	4,423,331	4,485,672	△62,341	△1.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534,180	4,404,816	129,364	2.9
Ⅳ. 조정항목	37,164	1,792,764	△1,755,600	△97.9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2,483,163	12,335,150	148,013	1.2

자료: 법무부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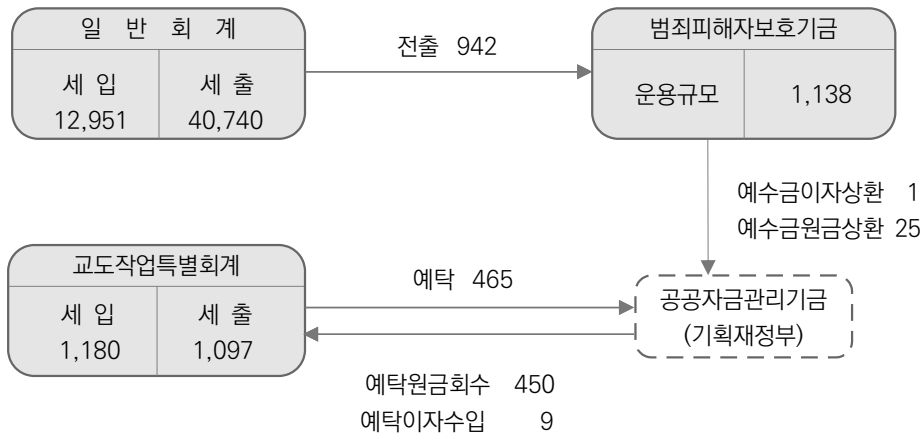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942억원이 전출되었다.

한편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65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450억원, 예탁이자수입 9억원을 받았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이자상환 1억원, 예수금원금상환 25억원을 납부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배상금지급**, ② **외국인보호관리**, ③ **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이 있다.

국가배상금지급 사업은 지급예상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억원이 감액(2,500억원 → 1,500억원)되었고,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은 내역사업인 보호외국인 수용경비 사업이 음압장비 활용 의료인력 대비 과도한 수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감안하여 3억 6,600만원이 감액(185억 6,600만원 → 182억)되었으며,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및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하여 3억 800만원이 감액(877억 3,300만원 → 874억 2,5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전자감독**, ②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③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등이 있다.

전자감독 사업은 전자감독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24억 600만원 증액(250억 4,300만원 → 274억 4,900만원)되었고,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수용자 급식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17억 5,300만원이 증액(2,391억 8,700만원 → 2,409억 4,000만원)되었으며,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7억 7,100만원이 증액(170억 9,300만원 → 178억 6,400만원)되었다.²⁾

1) 법제사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법제사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등이 있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가 하루에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도소에서 합숙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단가를 군장병과 동일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어 3억원이 증액(179억원 → 182억원)되었다.³⁾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5.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대한민국의 미래변영을 위한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검찰청 소관 5개 위원회들에 대한 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자제 및 신청자의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되지 않은 일반수용비 예산을 매년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집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변호사시험 사업은 관련 수당의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이후에도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총 5억 5,120만원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사업은 한 건의 계약 사항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 동일·유사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여러 업체에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으며, 일부 집행 내역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최근에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교정시설 확대 노력 및 가석방 제도 활용 등을 하고 있는데, 교정시설 확대 노력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석방 제도의 경우에도 명확한 방향 없이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축소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250-02목)의 지급 대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직급별 현원 증가율 대비 직책수행경비 집행액의 증가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청은 연례적으로 편성받은 직책수행경비 총액을 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다섯째, 소년원생수용 사업은 연례적으로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등 당초 편성한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소관 위원회 경비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및 미집행 경비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집행 부적절

가. 현 황

검찰청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공판활동지원 사업에 각 위원회의 수당 및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검찰청 소관 위원회 경비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¹⁾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¹⁾	불용액 ¹⁾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8,260	7,850	185	△117	7,919	7,731	111	77	7,300
범죄피해재산 환부심의회 및 자문위원수당 등	493	493	-	-	493	3	-	-	496
형사부 등 수사지원	87,425	85,553	86	△1,921	83,718	81,791	5	1,922	85,894
검찰수사심의 위원회 수당 등	26	26	-	-	26	-	-	-	26
검찰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	799	799	-	-	799	364	-	-	799
영장심의위원회	869	289	-	-	289	21	-	-	200
공판활동지원	2,175	2,165	-	-	2,165	2,161	-	4	2,561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	20	20	-	-	20	27	-	-	20

주: 1) 검찰청은 각 위원회 경비의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각 세부사업의 이·전용 등,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미집행된 예산을 세부사업의 다른 용도에 집행하였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음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나. 분석의견

검찰청 소관 5개 위원회들에 대한 경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집행되지 않은 일반수용비 예산을 매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위원회와 관련된 경비의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 소속 위원회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소속, 성격, 구성, 기능 등은 다음 표와 같다.

[검찰청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 현황
범죄피해 재산환부 심의회	• 소속: 18개 지방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 구성: 각 지방검찰청별 7명(위원장 포함)(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 • 관련 법령: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 기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근거하여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
검찰수사 심의 위원회	• 소속: 대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 구성: 위원장포함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민간위원 • 관련 법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기능: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심의
검찰시민 위원회	• 소속: 각 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 구성: 11명 이상 60명 이하, 만 19세 이상 시민 • 관련 법령: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기능: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등 제고
형사상고 심의 위원회	• 소속: 대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 구성: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50명 이하 민간위원 • 관련 법령: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기능: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영장심의 위원회	• 소속: 6개 고등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 민간위원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기능: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

자료: 법무부

동 위원회들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의 4개 위원회의 경우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은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및 검찰시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의 개최를 자제하였으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회 및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검찰청 소속 위원회 수당 등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 %)

구분	연도	산출내역	계획		집행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금액	횟수	금액	횟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심의회	2021 (신규)	심의수당 388,800 +자문수당 86,400 +개최비용등 64,800	493,497	36	1,050	3	0.2	피해자의 환부청구 또는 환부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데, 피 해자의 청구나 이의 신청이 저조함
	2022	심의수당 388,800 +자문수당 86,400 +개최비용등 64,800	493,497	36	2,596	-	0.5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2021 (신규)	심의수당 24,900 +행사경비 1,200	26,100	6	13,850	3	53.1	코로나19로 심의회 개최 자제
	2022	심의수당 24,900 +행사경비 1,200	26,100	6	-	-	0.0	
검찰 시민 위원회	2020	심의수당 1,029,600 +기타비용* 69,806	1,099,406	624	821,965	375	74.8	코로나19로 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
	2021	심의수당 772,200 +기타비용 27,206	799,406	468	247,640	178	31.0	
	2022	심의수당 784,080 +기타비용 15,326	799,406	475	364,650	261	45.6	
형사 상고 심의 위원회	2020	수당 20,000	20,000	26	41,240	51	206.2	해당없음
	2021	수당 20,000	20,000	26	10,100	11	50.5	코로나19로 인한 위 원회 개최 건수 감소
	2022	수당 20,000	20,000	26	27,940	32	139.7	해당없음
영장 심의 위원회	2021 (신규)	(일반수용비) 수당 763,200 +부대비용 57,600	780,000	288	10,573	5	4.1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개최되나, 사 법경찰관의 신청이 저조
		(자산취득비) 89,000	89,000		24,878			
	2022	(일반수용비) 수당 190,800 +부대비용 9,200	200,000	72	4,672	2	7.1	
		(자산취득비) 89,000	89,000		15,95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용용도가 광범위하여 편성목적 외의 사용의 소지가 큰 예산이다. 실제로 위원회 경비의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들의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대부분 본래 편성 목적과는 달리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집행(약 10억 2,480만원)되었다.

[검찰청 소속 위원회 경비(일반수용비 등) 미집행 부분에 대한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계획 금액	집행액	미집행액 (타용도 집행액)	동 위원회 경비(일반수용비) 미집행 부분을 타용도로 집행한 세부 내역
범죄피해 재산환부 심의회	2021	493,497	1,050	492,447	형 집행 관련 소모품, 사건관계인 자가진단 키트 등 코로나 19 방역물품
	2022	493,497	2,596	490,901	
검찰수사 심의 위원회	2021	26,100	13,850	12,250	형사부 소모품, 사건관계인 자가진단키트 등 코로나 19 방역물품 등
	2022	26,100	-	26,100	
검찰시민 위원회	2020	1,099,406	821,965	277,441	형사부 소모품, 사건관계인 자가진단키트 등 코로나 19 방역물품 등
	2021	799,406	247,640	551,766	
	2022	799,406	364,650	434,756	
형사상고 심의 위원회	2020	20,000	41,240	-	해당없음
	2021	20,000	10,100	9,900	공판부 소모품, 사건관계인 자가진단키트 등 코로나 19 방역물품 등
	2022	20,000	27,940	-	해당없음
영장심의 위원회	2021	780,000	10,573	769,427	형사부 소모품, 사건관계인 자가진단키트 등 코로나 19 방역물품, 검사실 노후 집기류 교 체 등
		89,000	24,878	64,122	
	2022	200,000	4,672	195,328	
		89,000	15,955	73,045	
계	2022	1,428,003	411,141	1,024,802	

주: 1. 검찰청은 미집행액을 집행한 세부 용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2. 2020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2021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검찰청은 소관 위원회 경비를 편성할 때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금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수용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변호사시험 사업 관련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부적정

변호사시험 사업¹⁾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및 사고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37억 4,500만원 중 3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변호사시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4,150	4,116	-	-	4,116	4,074	-	42
변호사시험	3,779	3,745	-	-	3,745	3,703	-	4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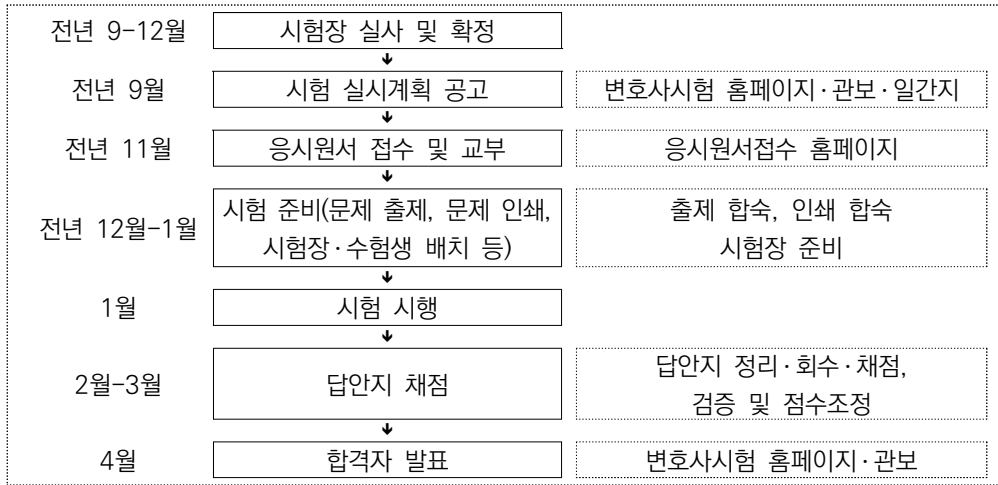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변호사시험은 통상 9월에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12월부터 1월에 걸쳐 문제 출제, 문제 인쇄, 시험장·수험생 배치 등 시험 준비를 하여 1월 초중순 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2년도 예산으로 2022년에 실시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 일부를 2022년 연초에, 2023년에 실시하는 제12회 변호사시험 경비 일부 2022년 연말에 각각 집행하였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8-305의 내역사업

[변호사시험 사업 집행절차]



자료: 법무부

1-1. 관서운영경비 현금집행의 부적정

가. 현 황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숙출제 시험위원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총 5억 5,120만원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등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에서 총 19억 2,543만원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2022년 시험관리관 등 수당 집행내역]

세목	건명	지급액(천원)	지급구분	지급날짜
기타 운영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시험위원 등 수당 지급	551,200	현금지급	2022.12.26.
	제12회 변호사시험 대비 문제은행 출제수당 지급 청구	288,160	현금지급	2022.6.9.
	제11회 변호사시험 채점수당 지급	265,629	현금지급	2022.3.2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시험위원 등 수당 및 여비 지급	546,950	현금지급	2022.1.20.

주: 동 사업의 집행내역 중 일부만 기재함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변호사시험 관련 수당의 현금지급 문제에 관한 국회의 지적²⁾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총 5억 5,120만원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금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³⁾을 위배한 것으로, 동 규정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영의 위임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4항⁵⁾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2.11. (시정요구명: 변호사시험 관련 특근 매식비 및 기타운영비의 현금집행 및 현금보관 지양 필요, 시정요구유형: 시정)

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4) ① 운영비(일부 제외)·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또는 통상적인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②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④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⑤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 가능

5)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예산과목	용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일숙직비, 비서실 및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서 해외출장지원경비중 정액 경비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및교정비
-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 위문금·위로금 등 성격상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경비중 현금에 의한 납부가 불가피한 경비	
- 기타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2]

이와 같이 「국고금관리법」 및 관련 법령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현금 지급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의 방식의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시험 위원 수당은 계좌이체 등 현금지급 외의 수단을 통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집행 방식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⁶⁾ 특히, 유사한 수당인 시험장 책임관·관리관 등의 시험 감독수당에 대한 현금지급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⁷⁾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금지급을 통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2.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 초과 지출 건에 대한 분할 집행의 부적정

가. 현 황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사업의 일반수용비 2022년도 본예산 6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제2차 추경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2022년 12월 7일에 사업운영비 부족을 사유로 1억 1,100만원을 이·전용 후 예산현액 6억 8,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변호사시험 사업의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변호사시험	3,779	3,745	-	-	3,745	3,703	-	42	4,128
일반수용비 (210-01)	608	574	-	111	685	685	-	-	60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6)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명단 등 변호사시험 관련 사항은 보안유지가 필요하여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당 지급 등의 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금집행이 발생한 것이며, 향후에는 보안유지에 유의하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2.11. (시정요구명: 변호사시험 관련 특근 매식비 및 기타운영비의 현금집행 및 현금보관 지양 필요, 시정요구유형: 시정)

나. 분석의견

변호사시험 사업은 한 건의 계약 사항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 동일·유사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여러 업체에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으며, 일부 집행 내역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다수 보이므로, 법무부는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22조⁸⁾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관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해당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⁹⁾에서 예외적으로 간략한 지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¹⁰⁾ 및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1항·제3항¹¹⁾, 그리고 관련 별지 제1호에 따르면 운영비(210목)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8)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9)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 (이하 생략)

11)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 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210목)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거나 건당 5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차년도에 수행하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시험장 관련 물품 혹은 합숙출제 관련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유사한 소모성물품을 결제 일자, 결제 업체 등만 달리하여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변호사시험 사업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일부]

(단위: 원)

일자	내용	집행액	집행대상
12.27.	변호사시험관련 물품 구입	3,950,000	◇◇◇◇◇과천청사
12.26.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4,940,000	○○문구사
12.26.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900,000	◇◇◇◇◇과천청사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방역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4,950,000	
12.26.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950,000	□□식품
12.26.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850,000	△△△△△매장
12.22.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606,440	△△농협하나로마트1
12.21.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800,000	○○문구사
12.21.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800,000	◇◇◇◇◇과천청사
12.21.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800,000	□□식품
12.21.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867,200	△△농협하나로마트1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2,783,580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883,200	
12.21.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750,000	△△△△△매장
12.20.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및 임차료 지급	3,890,020	△△농협하나로마트1
12.20.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4,800,000	△△△△△매장
	변호사시험 준비	470,000	
12.16.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및 임차료 지급	2,250,000	□□식품

(단위: 원)

일자	내용	집행액	집행대상
12.13.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2,561,600	○○문구사
12.13.	변호사시험 답안지 보관 물품 구입비 지급	4,676,100	□□상사
12.07.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2,533,300	□□상사
12.07.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4,845,000	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3,999,000	
	제12회 변호사시험 책임관·보좌관 기념품 제작 대금 지급 의뢰	3,300,000	
	제12회 변호사시험 인쇄합숙 물품 구입비 지급	2,000,000	
11.23.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2,567,000	◇◇◇◇◇과천청사
11.21.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방역물품 구입비 지급 의뢰	3,703,000	◇◇◇◇◇과천청사

주: 동 사업의 집행내역 중 일부만 기재함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7일 한○○○○, 20일 △△△△△매장, 21일 △△농협하나로마트1, 26일 ◇◇◇◇◇과천청사 결제 건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건당 500만원 이하)하여 관서운영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2월 20일 △△△△△매장 결제건, 12월 21일에 □□식품·△△△△△매장·△△농협하나로마트1 결제건, 12월 22일 △△농협하나로마트1 결제건, 12월 26일 □□식품 및 △△△△△매장 결제건 등은 모두 과자, 컵라면, 음료수 등 유사한 식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일부 △△농협하나로마트1의 결제건들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견적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의 전자자금이체일(12.21.과 12.22.)만 달리하는 건들도 있었다.

12) 법무부에서 제출한 각 결제건별 견적서 상의 내역에 따른다.

[일부 업체 결제 및 견적 현황]

지급일	2022.12.21.	2022.12.22.
결제건명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관련 물품 대금 지급
지급액	4,867,200원	4,606,440원
지급업체	△△농협하나로마트1	△△농협하나로마트1
지급구분	전자자금이체 지급	전자자금이체 지급
견적일	2022.12.8.	2022.12.8.
상품구분	컵라면, 복사용지 등	음료, 물티슈 등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지막으로 관서운영경비 집행내역 중 일부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12월 7일 행○○○○에서 합숙출제 관련 물품을 구매하면서 4,845,000원을 지급하고, 책임관·보좌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첫 번째 구매 건의 경우 합숙출제 시험위원, 출제관리원, 보안요원(용역) 등에게 기념품(가습기)을 제공하기 위하여, 두 번째 구매 건의 경우 시험장의 책임관·보좌관에게 기념품(우산, 수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관련 사항은 보안유지가 중요하므로 수당과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변호사시험 사업은 한 건의 계약 사항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 동일·유사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여러 업체에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으며, 일부 집행 내역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다수 보이므로, 법무부는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¹⁾은 전국 교정기관 노후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를 수행하며, 수용 거실 출입문 자동화 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171억 9,800만원 중 1,117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프로그램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106,108	106,108	11,990	△900	117,198	111,777	1,231	4,190	107,68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심화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가석방 제도를 명확한 방향 없이 일시적으로 확대·축소하는 방식은 형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의 교정시설 확대 노력은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으며, 2021년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밀수용 인권침해 개선 재권고가 있고, 최근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구치소·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8-305

이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률은 2022년까지 꾸준하게 완화되다가, 2023년에 다시 109.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1일 평균 수용률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109.8

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최근에 다시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1일 평균 수용률 감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법무부의 노력보다는 일시적인 가석방 증가 등에 의해 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용공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2,04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반면, 2017년 대비 2022년 1일 평균 현원은 6,181명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률 감소는 주로 정원 증가보다 현원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인원(정원) 증가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1일 평균 수용률	119.8	114.5	113.8	110.8	106.9	109.8	109.8
1일 평균 현원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54,472
정원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49,600
전년대비 정원 증가	870	0	170	610	380	10	610

자료: 법무부

2) 법무부는 2022년 정원 증가 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일부 기관의 준공일정이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2022년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의 방지 및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결정 수가 코로나19 전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출소 및 가석방 현황을 살펴보면 출소자 중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연말 10.8%에서 2022년에는 20.0%로 약 10%p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석방 적격심사 및 결정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5.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수	8,797	9,384	11,328	12,203	13,035	13,794	5,871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 수	8,247	8,667	8,139	7,876	9,354	10,281	3,665

주: 성인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출소 및 가석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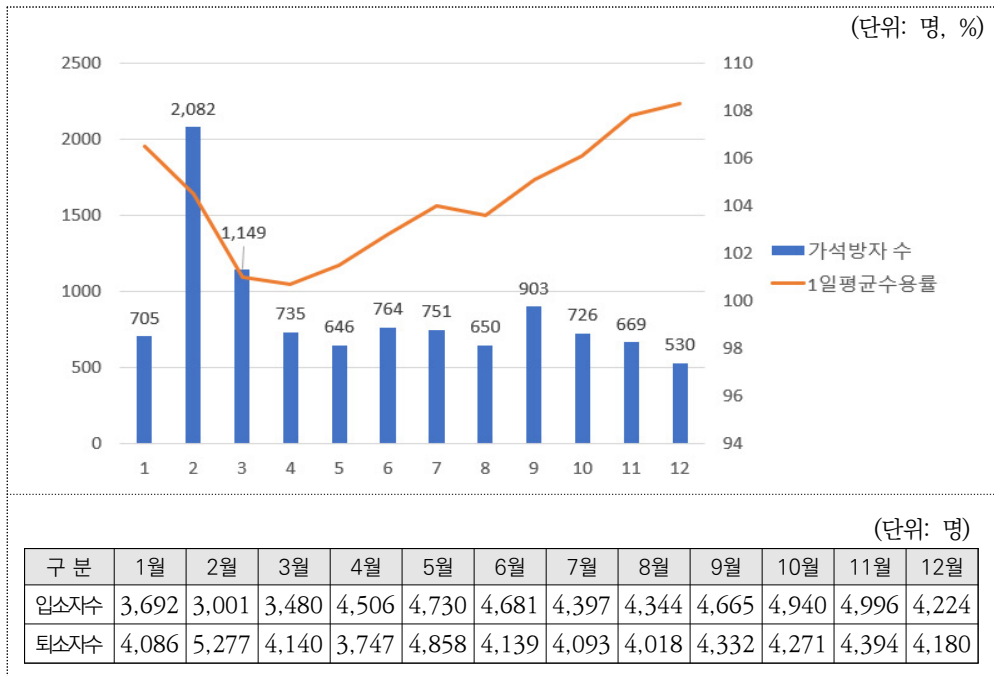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5.
출소자 수	86,721	78,216	75,980	68,791	51,476	51,535	24,839
출소자 중 가석방자 수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3,678
출소자 중 가석방자 비중	9.5	11.1	10.8	11.5	18.2	20.0	14.8

주: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가석방 확대 시행은 2022년 1분기까지 이어졌으나, 이후부터는 확진자 감소에 전환에 따른 정부의 방역완화 정책으로 가석방자는 기존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교정시설의 입소자는 증가하여, 2022년도 2분기 이후 교정시설 과밀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월별 1일 평균수용률 수준에서도 나타나는데 2022년 4월 기준 수용률 100.7% 수준에서 2022년 12월 기준 수용률 108.3%로 7.6%p가 증가한 것이다.

[2022년 교정시설 수용 현황]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교정시설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밀수용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문제이다.³⁾ 현재와 같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감염병 문제가 완화되자 가석방을 다시 줄이는 방식은 형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후 대법원은 구치소,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등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과밀수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가석방 확대와 같은 일시적인 노력을 제외하면 수용시설 확대 노력은 증가하는 수용인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제한적인 가석방제도 운영 등을 지적(형사정책연구원,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2017)하거나,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1년 이하 단기수형자 가석방 활성화 등을 제안(한국교정학회, 「교정보호체계의 재범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 2022)하는 등의 논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심화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가석방 제도를 명확한 방향 없이 일시적으로 확대·축소하는 방식은 형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의 교정시설 확대 노력은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¹⁾은 검찰청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내에는 검찰청 내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250-02목)가 편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동 직책수행경비의 2022년도 예산현액 155억 4,600만원 중 155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30,865	30,865	-	180	31,045	30,781	-	264	30,865
직책수행경비 (250-02)	15,199	15,199	-	347	15,546	15,544	-	2	15,19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250-02목)의 지급 대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직급별 현원 증가율 대비 직책수행경비 집행액의 증가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청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8-252

확보하기 위하여 직책수행경비 수령 대상 및 집행액 증가율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2018년 154억원부터 2022년 152억원까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의 경우 2018년에 144억원, 2019년에 149억원, 2020년에 152억원, 2021년에 157억원, 2022년에 155억원으로 집행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8	15,375	△989	14,386	14,385	1
2019	15,567	△633	14,933	14,933	-
2020	15,167	35	15,202	15,200	2
2021	15,099	575	15,673	15,650	24
2022	15,199	347	15,546	15,544	2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및 2019년도의 경우 집행하지 못하는 직책수행경비를 형사보상 사업 등에 이·전용 등을 하였는데, 2020년도 이후부터는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 혹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복리후생비(210-12목)에서 이·전용 등을 받고 있다.

[연도별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비목		세부사업명	비목	
'18	이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738	형사보상	310-01 (손실보상금)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이용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11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110-03 (상용임금)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 부족 으로 전용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153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210-03 (피복비)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부족으로 전용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86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210-04 (급식비)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부족으로 전용
	조정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2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19	이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633	형사보상	310-01 (손실보상금)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이용
'20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10-06 (일·숙직비)	65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전용
	이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30	형사보상	310-01 (손실보상금)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이용
'21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10-12 (복리후생비)	120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부족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210-01 (일반수용비)	455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부족
'22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210-01 (일반수용비)	62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부족
	전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10-12 (복리후생비)	285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250-02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부족

자료: 법무부

직책수행경비는 경직성 경비로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전용이 발생한 것은 해당 경비의 편성 혹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²⁾ 실제로 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되는 직책별 인원수 현황 자료를 요청에 대하여 지급 인원이 수시로 변동되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해당 경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청 직급별 현원을 살펴보면 검사 및 검사직무대리, 일반직의 현원 합계는 2018년에 2,955명, 2022년에 2,994명으로 1.3%(39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수행경비는 8.1%(11억 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수행경비 단가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점, 직급별 현원과 직급별 동 경비 수령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책수행경비가 동 경비 지급 대상에게 적합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2021년 및 2022년 직책수행경비 전용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법무부로, 그 중 검찰청만 분리해서 보더라도 전용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 외의 타 부처에서는 경직성 경비인 직책수행경비가 전용증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경찰청의 경우 전용 증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조직 확대 개편, 특허청의 경우 경직성 경비인 직책수행경비의 전년대비 감액편성으로 인한 소요 발생 등으로 소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청의 경우 전용 증액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부처별 직책수행경비 전용 증액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순위	부처명	전용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2021	1	법무부	575	19,192	18,877
		검찰청	575	15,673	15,650
	2	경찰청	279	9,458	9,362
	3	보건복지부	90	1,538	1,496
2022	1	법무부	404	18,899	18,793
		검찰청	347	15,546	15,544
	2	특허청	111	1,171	1,155
	3	기획재정부	61	1,482	1,425

주: 검찰청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 사업을 제외한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검찰청 직급별 현원]

(단위: 명, %)

구 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B)	증감	
						증감인원 (B-A)	증감률 (B-A)/A
총 합계(A+B)	2,955	2,977	3,033	3,050	2,994	39	1.3
검사·검사직무대리(A)	2,233	2,243	2,290	2,303	2,253	20	0.9
1) 검찰총장	1	1	1	1	1	-	-
2) 대검차장	1	1	1	1	-	△1	△100.0
3) 고등검사장	6	4	7	7	4	△2	△33.3
4) 검사장(대검검사급)	34	34	31	35	39	5	14.7
5) 10년이상 검사	948	977	1,015	1,073	1,090	142	15.0
6) 10년미만 검사	1,131	1,113	1,116	1,077	1,008	△123	△10.9
7) 검사직무대리	112	113	119	109	111	△1	△0.9
일반직(B)	722	734	743	747	741	19	2.6
1) 1급(갑)	1	1	1	1	1	-	-
2) 2,3급(갑)	24	25	21	20	20	△4	△16.7
3) 3급복수직(갑)	16	17	16	19	19	3	18.8
4) 4급(갑)	110	104	106	106	115	5	4.5
5) 4급(을)	71	70	74	72	75	4	5.6
6) 4급(기타)	3	3	3	4	4	1	33.3
7) 5급	497	514	522	525	507	10	2.0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법무부

따라서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지급 단가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의 증가율(1.3%)과 집행액의 증가율(8.1%)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검찰청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책수행경비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³⁾

3) 검찰청은 2022년 검사 사직(146명)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급별 현원수와 직책수행경비 집행액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2022년 월별·직급별 직책수행경비 수령인원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청은 매월 휴직, 유학, 10년차 이상 경력 인원 증가 등을 매월 확인하고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검사 및 검사직무대리, 5급 이상 보직자 등으로 지급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오지급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증가율 편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차 이상 검사 비중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증가율 편차는 과도하다.

둘째, 검찰청은 연례적으로 편성받은 직책수행경비 총액을 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지침상 직책수행경비 단가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분을 감액하는 등의 조정을 통하여 편성받은 총액을 내에서 동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책수행경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동 경비는 지급단가에 따라 집행하되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검찰청은 현재 검찰청장, 대검차장, 고등검사장, 검사장(대검검사급)에 대하여는 지침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급액(1.5배)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0년이상 검사 및 일반직 1급(갑), 2,3급(갑)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차등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검찰청이 차등지급을 통하여 추가 지급한 직책수행경비는 약 11억 4,600만원(편성 기준) 규모이다.

[검찰청 직책수행경비 산출 단가 및 지침상 단가 범위]

(단위: 천원)

내역	금액	산출 단가	지침상 단가 범위
1. 직책수행경비	14,626,845		
가. 검사, 검사직무대리	13,747,962		
1) 검찰총장	18,450	1,537,500원	1,025,000원~1,537,500원
2) 대검차장	13,500	1,125,000원	750,000원~1,125,000원
3) 고등검사장	81,000	1,125,000원	750,000원~1,125,000원
4) 검사장(대검검사급)	445,500	1,125,000원	750,000원~1,125,000원
5) 10년이상 검사	7,830,432	795,000원	700,000원~1,050,000원
6) 10년미만 검사	4,766,688	400,000원	400,000원
7) 검사직무대리	576,000	400,000원	400,000원
8) 부족분	16,392	16,392,000원	
나. 일반직(251명,보조기관)	878,883		
1) 1급(갑)	9,349	795,000원	700,000원~1,050,000원
2) 2,3급(갑)	191,923	680,000원	600,000~900,000원

(단위: 천원)

내역	금액	산출 단가	지침상 단가 범위
3) 3급복수직(갑)	88,200	500,000원	500,000원
4) 4급(갑)	469,224	350,000원	350,000원
5) 4급(을)	3,528	300,000원	300,000원
6) 4급(기타)	56,448	150,000원	150,000원
7) 5급	60,211	80,000원	80,000원
2. 부족분	571,720	571,720,000원	

자료: 법무부

그러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무적 규정이 아닌 재량적 규정이므로, 재량이 있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그 재량의 범위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집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편성된 직책수행경비 내에서 최대 지급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타 사업 예산을 가져오기 보다는 추가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검찰청은 당초 편성된 직책수행경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직책 수행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규모(약 11억 4,600만원)를 감액 조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례적으로 이·전용(2022년 3억 4,700만원)을 통하여 직책 수행경비의 총액을 증액시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찰청은 향후 직책수행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책수행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이 아닌 추가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 타용도 집행의 부적정 및 구호 및 교정비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현 황

소년원생수용 사업¹⁾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 등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33억 7,300만원 중 224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소년원생수용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년원생 수용	23,518	23,373	-	-	23,373	22,411	-	962	25,21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구호 및 교정비’, ‘공무직 인건비’, ‘출원생 자립지원’,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구호 및 교정비’ 내역사업은 소년원생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및 귀주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소년원생수용 사업은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예탁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급량비 예산을 현원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2-300

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계좌 잔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생수용 사업의 ‘구호 및 교정비’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소년원생 급량비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편성 예산 대비 집행이 부진하여 2022년에는 41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3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반면, 소년원생 피복비 및 소년원생 의료비는 2019년 이후 매년 편성액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연도별 구호 및 교정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액	3,487	3,453	3,761	4,112
	집행액	2,904	2,931	2,740	3,006
소년원생 피복비	예산액	373	373	373	373
	집행액	582	486	716	726
출원생 귀가여비	예산액	40	40	40	40
	집행액	0.3	-	0.1	5
소년원생 의료비	예산액	551	757	567	754
	집행액	964	1,205	1,285	1,426
출원생 외래진료비	예산액	-	-	-	115
	집행액	-	-	-	0.1
합 계	예산액	4,451	4,623	4,741	5,394
	집행액	4,450	4,622	4,741	5,163

자료: 법무부

소년원생 급량비의 집행부진 문제는 예산 편성 시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1,510명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2022년에도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인원이 예산 편성 기준 수용인원 1,510명의 68.2%에 불과한 1,030명으로 나타나 급량비 집행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 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용인원	1,510	1,342	1,261	1,066	1,030

주: 해당연도 1일 평균 수용인원

자료: 법무부

그럼에도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소년원생 급량비 사업에서 미집행된 부분을 소년원생 피복비 및 의료비에 초과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원생 피복비 및 소년원생 의료비의 경우에도 기준 편성 인원이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집행된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소년원생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가 소요 대비 과도하게 예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건강보험법」²⁾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소년원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미리 공단에 예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년원생수용 사업에서 매년 구호 및 교정비 예산으로 ‘소년원생 의료비’를 편성하여 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년원생수용 사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약하는 금액은 평균 7억 4,680만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집행되는 4억 8,450만원에 비하여 큰 규모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약 계좌 잔고는 2019년 1억 9,0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9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약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약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평균
공단계좌 잔고 (연말기준)	190 (이월 △136포함)	488 (이월 190포함)	668 (이월 488포함)	913 (이월 668포함)	564.8
당해연도 예탁	768 (이자, 납부 대체 127포함)	792 (이자, 납부 대체 6포함)	705 (이자, 납부 대체 17포함)	722 (이자, 납부 대체 102포함)	746.8
당해연도 집행	442	494	525	477	484.5

주: 납부대체란 소년원 입소자 사후관리에 따라 기존 사용한 법무부 예산을 공단 부담금으로 대체한 금액으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시스템 정보가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발생

자료: 법무부

즉, 법무부는 소요 대비 과도한 급량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된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필요 이상으로 예탁하였는데, 이는 편성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했다는 점 및 소요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예탁 잔고를 증가시켜 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예산집행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편성 받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구호 및 교정비 예산으로 소년원생 의료비를 편성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의 예탁금액 잔고 및 집행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¹⁾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358억 200만원 중 35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²⁾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행정경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48억 1,800만원 중 440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 및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32,863	32,522	81	3,199	35,802	35,516	25	261
교도소 행정지원	42,156	42,098	-	2,720	44,818	44,041	-	77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 회비를 위하여 2020년에 2,043만원, 2021년에 1,513만원, 2022년에 1,768만원을 지원하여 총 5,323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의 경우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로 1,458만원,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에서 사업추진비(240-01목)로 31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8-256

2) 코드: 일반회계 1531-300

[연도별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 회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비목	2020	2021	2022	합 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583	12,233	14,583	43,399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추진비(240-01)	3,843	2,893	3,095	9,831
합 계		20,426	15,126	17,678	53,23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의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이와 같은 예산 집행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일정 금액의 적립식 부담금을 회비의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2022년 회비 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장 모임의 명칭은 ‘법무유관기관장 업무협의회’와 같이 업무적 목적임을 추정할 수 있는 모임부터, ‘청호회’, ‘송도회’, ‘화요회’, ‘목요회’ 등 모임의 목적을 알 수 없는 모임도 있으며, 일부 모임의 경우 ‘목야산악회’, ‘친목회’와 같이 업무적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관별 기관장 모임 회비 집행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지급내역	지급액	지급방식
합 계		17,677,900	-
포항교	상목회, 목우회 회비 납부	1,200,000	현금지급
진주교	진관회, 진주시기관장회 회비 납부	960,000	전자자금이체, 계좌이체(수동)
통영구	통영회, 경남지역 법무기관장 회비 등 납부	954,670	전자자금이체
영월교	수요회, 금강회 회비 납부	840,000	계좌이체(수동)

(단위: 원)

기관명	지급내역	지급액	지급방식
원주교	치악회, 이수회 회비 납부	840,000	전자자금이체
의정부교	수요회 등 2개 모임 회비 납부	780,000	계좌이체(수동)
안동교	수요회, 동맥회 회비 납부	770,000	전자자금이체
천안교	화요회, 수요회 회비 납부	760,000	계좌이체(수동)
경주교	경우회, 송우회 회비 납부	720,000	계좌이체(수동)
김천소년교	화요회, 목요회 회비 납부	720,000	전자자금이체
군산교	이수회, 새만금회의 회비 납부	650,000	전자자금이체
대구청	청구회, 범무기관장모임 회비 납부	630,000	전자자금이체
목포교	청호회 회비 납부	600,000	계좌이체(수동)
인천구	송도회 회비 납부	600,000	계좌이체(수동)
화상직훈교	화목회 회비 납부	600,000	계좌이체(수동)
천안개방교	화요회, 수요회 회비 납부	580,000	계좌이체(수동)
대구교	달성군기관장모임, 대구범무기관장모임 회비 납부	560,000	계좌이체(수동)
청주교	청심회, 청법회 회비 납부	480,000	현금지급(이체)
여주교	월요회 회비 납부	376,000	계좌이체(수동)
밀양구	유관기관 업무협의기구 회비 납부	360,000	계좌이체(수동)
서산지소	서산지발전협의회, 성연면기관단체협의회 회비 납부	360,000	계좌이체(수동)
수원구	수목회 회비 납부	360,000	계좌이체(수동)
해남교	해남군 기관장 친목회 회비 납부	360,000	전자자금이체
청주여교	청법회 연회비 납부	300,000	전자자금이체
창원교	범무기관장 업무협의 회비 납부	270,000	전자자금이체
홍성교	통합방위의회, 홍성군기관장협의회 회비 납부	267,230	계좌이체(수동)
안양교	안양회, 만안회 회비 납부	260,000	전자자금이체
강릉교	강릉 국가기관장회의 회비 납부	240,000	계좌이체(수동)
순천교	범무유관기관장 업무협의회 회비 납부	240,000	계좌이체(수동)
춘천교	유관기관 업무협의 기구 회비 납부	240,000	현금지급
충주교	관공서 기관장 업무협의 운영 경비	240,000	전자자금이체
광주교	북광회 회비 납부	200,000	계좌이체(수동)
서울구	유관기관 업무협의 회비 납부	120,000	전자자금이체
상주교	목야산악회 회비 납부	90,000	전자자금이체
대구구	범무기관장 업무협조비 납부	60,000	현금지급
부산구	사상구 기관장회의 회비 납부	50,000	계좌이체(수동)
울산구	범무유관기관장 회비 납부	40,000	전자자금이체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별 교도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기관장 간의 회의 자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기관장 모임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임의 자산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으로 모임에 적립식 부담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지역별 교도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기관장 간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경비는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에서 현금 지급이 아닌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임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명백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예산으로 모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각 지역별 교도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기관장 간의 회의의 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예산으로 모임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기관장 회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세부사업 및 비목 지급방식 등을 달리하여 집행⁴⁾하고 있는데, 동일한 목적의 경비를 서로 다른 세부사업 및 비목으로 편성하고 지급방식 등을 달리하는 것은 예산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연도별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 회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비목	2020	2021	2022	합 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583	12,233	14,583	43,399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추진비(240-01)	3,843	2,893	3,095	9,831
합 계		20,426	15,126	17,678	53,230

자료: 법무부

3) 특히, 신약화나 친목회와 같은 사적 모임의 경우 지원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도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체적으로는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경우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에서,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비(240-01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우선 세부사업 및 비목의 경우, 각 지역별 교도소에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기관장 간의 회의 자리가 필요한 경우 ‘각 관서의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비(240-01목)가 아닌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는 ‘민간 및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 민간 및 유관기관과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⁵⁾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급방식의 경우 현금 지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동 경비를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를 통해 집행한다고 하였을 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240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자금이 당초 요청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경비는 정부구매카드 지급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관장 모임 회비 현금지급 현황]

기관명	지급내역	현금지급	
		건수	금액
포항교	상목회, 묵우회 회비 납부	12건	1,200,000원
청주교	청심회, 청법회 회비 납부	12건	480,000원
춘천교	유관기관 업무협의 기구 연회비 납부	1건	240,000원
대구구	법무기관장 업무협조비 납부	2건	60,000원

자료: 법무부

5) 즉,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따를 때에도, 적립식 부담금 형태로 모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¹⁾은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업무시스템 임차 등, 시스템개발 연구용역, 출입국업무장비 도입·교체, 전자여행허가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78억 6,400만원 중 17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5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7,864	17,864	-	-	17,864	17,206	109	548	25,17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시스템개발연구용역’ 내역사업과 ‘출입국업무장비 도입·교체’ 내역사업에 총 4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시스템개발연구용역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147	110
출입국업무장비 도입·교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H/W, S/W	334	245
합 계		481	355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8-305

나. 분석의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스템 개발 가능기간에 대한 검토 없이 연말에 계약금의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므로,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사업²⁾은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입찰건명: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사업)³⁾, ② 개인정보영향평가, ③ 상용 S/W 구매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의 경우 2022년 12월 19일 계약 체결(계약기간 150일) 후 12월 22일 선금 지급 요청을 받아 12월 23일 선금을 지급하였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 계약 관련 선금지급 현황]

(단위: 천원)

계약상대방	비목	사업예산	낙찰금액	선금	비율
주식회사 이즈파크	일반연구비(260-01)	112,300	110,000	110,000	100.0%
	자산취득비(430-01)	161,980	154,000	74,800	48.6%
합계		274,280	264,000	184,800	70.0%

자료: 법무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⁴⁾에 따르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2)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내용]

사업내용	비목	사업예산	사업추진방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	일반연구비(260-01)	112,300	협상에 의한 계약
	자산취득비(430-01)	161,980	
개인정보영향평가	자산취득비(430-01)	34,000	협상에 의한 계약
상용 S/W 구매	자산취득비(430-01)	180,000	조달청 직접구매
합 계		488,280	-

자료: 법무부

3) 입찰공고번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022-21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이행 경과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려는 취지이다.

동 구매 계약의 계약기간은 150일로, 법무부는 12월 23일 선금 지급 이후 과업 수행기간이 9일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전체 계약금액 2억 6,400만원의 70.0%에 해당하는 1억 8,480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한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목별로도 선금 집행 비율이 일반연구비(260-01목)와 자산취득비(430-01목)가 각각 100.0%, 48.6%로 다르게 집행되었는데, 해당 시스템 개발이 과업 수행기간 9일 내에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목별로도 이행가능한 수준만큼 선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금을 집행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를 사유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② 단일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긴급공고로 추진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 계약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고가 진행되었으며, 단일응찰에 의하여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제안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① 공고기간을 단축(40일 → 10일)하고, ② 단일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 및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수 있다.⁵⁾

법무부는 동 계약을 ① 긴급공고로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2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② 단일응찰에 의하여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⁶⁾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① 두 규정 모두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조달기업 지원’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입찰 참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유효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코로나19를 사유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② 단일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5) 특히, 동 계약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사업예산 481,000,000원, VAT포함)와 입찰공고서(추정가격 249,345,455원, VAT 포함시 274,280,000원) 간 금액이 다른데, 이는 제안요청서는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구매’ 외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상용 S/W 구매’ 내용도 혼재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짧은 공고기간 내에 이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제안요청서를 통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L」의 “II. 2022회계연도 결산 총평, 1.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동 특례가 3년 이상 지속되어 상시화됨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 등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워졌으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 현 황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¹⁾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특별감찰활동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동 프로그램의 2022년도 예산현액 9억 9,800만원 중 6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특별감찰관활동	998	998	-	0	998	619	-	379	997
특별감찰관 인건비	266	266	-	△28	238	-	-	238	265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333	333	-	△98	235	100	-	135	333
특별감찰활동	399	399	-	127	526	519	-	7	39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의 중도사직(2016.9.) 이 후 감찰과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다가 2018년 4월 특별감찰과장 및 잔여 감찰담당관의 임기만료 퇴직으로 과장직무대행체제 종료 후 정원 8명 대비 현원 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파견 공무원(파견 2명, 공무원 1명)이 인력, 예·결산 및 국회 대응, 문서 및 시설 관리 등 특별감찰관 임명 시 조직 운영 재개를 대비하여 조직 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을 수행 중이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800

[특별감찰관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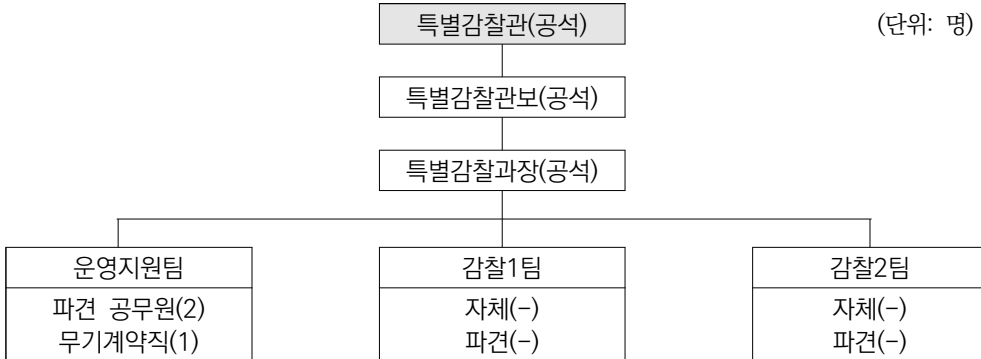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총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3·4급	별정직 5급
정원(현원)	8(0)	1(0)	1(0)	1(0)	5(0)

자료: 법무부

[특별감찰관 조직 현황]

(단위: 명)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장기간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을 정부 청사 내로 이전하여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은 2018년 4월부터 공석으로 특별감찰활동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활동 재개를 대비하여 공석인 특별감찰관실 인원 및 존재하지 않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을 반복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특별감찰활동 예산 편성 후, 전용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²⁾를 위한 월 임차료 3,490만원, 관리비 1,680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소재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의 유지비는 2015년 계약 당시부터 매년 3%씩 인상되면서 2018년부터는 3개월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였다. 2022년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사무실 위치는 기존 8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도별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응액 (E)	집행내용
		본예산	추경(A)					
특별 감찰관 인건비	2018	805	805	-	805	102	703	소속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2019	777	777	△210	567	-	567	-
	2020	372	372	△368	4	-	4	-
	2021	376	376	△269	107	49	58	소속 공무원 2018년 미지급 보수 지급
	2022	266	266	△28	238	-	238	-
	2023	265	265	-	265	-	-	-
특별 감찰관 기본경비	2018	388	388	-	388	129	259	기타직 근로자 상용임금 및 수당, 사무용품 구입,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등
	2019	386	386	-	386	96	290	
	2020	383	383	-	383	94	289	
	2021	333	333	△140	193	98	95	
	2022	333	333	△99	235	100	135	
	2023	333	333	-	333	-	-	
특별 감찰 활동	2018	1,039	1,039	-	1,039	606	433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
	2019	519	519	210	729	727	1	
	2020	383	383	368	751	749	2	
	2021	364	364	409	773	772	1	
	2022	399	399	127	526	519	7	
	2023	399	399	-	399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사무실 임차료 편성에 대하여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 및 대통령의 지명을 통하여 가능³⁾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 논의에

3) 「특별감찰관법」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정확한 임명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임명 직후 감찰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유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미반영으로 조직이 청산되는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 후 조직 재개 준비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신규 사무실 임차 및 사무기구 구입 등 중복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특별감찰관 추천 등이 시작되고 나서 예비비 요청 등을 진행하더라도 감찰활동 추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조직 인원 중 특별감찰관을 제외한 특별감찰관보 및 특별감찰과장, 감찰담당관 7명의 경우 자체채용 인원으로, 채용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감찰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⁴⁾

따라서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을 정부청사 내로 이전하여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4) 유사한 사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경우 2021년 1월 21일 출범 후에 1~2개월 내에 검사·수사관·행정직 등을 충원하고자 예비비를 편성받았으나,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말 기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49.4%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수처 검사의 경우 채용에 통상 4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관은 통상 3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실의 경우에도 공수처와 조건은 다르지만 채용에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감찰활동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보호관찰활동 사업¹⁾은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27억 1,400만원 중 12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보호관찰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호관찰 활동	13,277	12,714	-	-	12,714	12,713	-	1	14,00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²⁾ 치료명령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에게 실시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보호하는 제도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³⁾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⁴⁾에 따르면 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은 원칙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5-300

2) 이하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약제진료비’ 예산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국가는 법 제44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피치료명령자가 다음 각 호

적으로 치료명령 대상자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치료명령 대상자가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억 9,320만원을 편성하고 1억 4,183만원을 집행(집행률 73.4%)하였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억 3,680만원을 편성하고 2,074만원을 집행(집행률 15.2%)하였으며,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6,257만원을 집행(집행률 49.3%)하였다.

[2022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산출식	예산액	집행액
기초생활수급권자	161명 × 2회 × 12월 × 50,000원	193,200	141,830
차상위계층	114명 × 2회 × 12월 × 50,000원	136,800	20,737
합 계		330,000	162,56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아닌 기타보전금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은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매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집행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해당 불용액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연도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2022		
	편성	집행	불용	편성	집행	불용	편성	집행	불용
일반수용비(210-01)	4,379	4,102	276	5,419	4,984	435	5,574	5,574	-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330	147	183	330	132	198	330	163	167

주: 1. 편성은 예산현액 기준
 2. 약제진료비는 제외한 금액임
 자료: 법무부

그러나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용용도가 광범위하여 편성목적 외의 사용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명령 대상자의 심리치료비는 원래 자기부담이 원칙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수용비의 사용용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치료비 지원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합하면, 일반수용비는 사용용도가 광범위하여 편성목적 외의 사용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심리치료비의 경우 일반수용비가 아닌 기타보전금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약제진료비 제외)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 2019년도 이후로 매년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2019년도에 2억 4,747만원(75.0%), 2020년도에 1억 4,673만원(44.4%), 2021년도에 1억 3,284만원(40.2%), 2022년도에 1억 6,257만원(49.3%)을 집행하였다.

특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비의 경우 매년 1억 3,6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109만원(15.4%), 2020년 2,138만원(15.6%), 2021년 2,042만원(14.9%), 2022년 2,074만원(15.2%)이 집행됨에 그쳐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집행내역]

(단위: 명,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편성인원	161	114	161	114	161	114	161	114
지원인원	193	30	174	33	145	29	158	23
편성액	193,200	136,800	193,200	136,800	193,200	136,800	193,200	136,800
집행액	226,379	21,089	125,415	21,317	112,421	20,424	141,830	20,737
집행률	85.3	15.4	64.9	15.6	58.2	14.9	73.4	15.2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은 법무부에서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와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치료명령 대상자가 치료명령을 받아 지역별 보호관찰소에 등록하러 왔을 때 치료명령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취소되고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력을 이유로 치료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명령 대상자의 보호관찰 신고 시 각 지역별 보호관찰소에서 동 제도를 필수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심리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시설보완 사업¹⁾은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작업장 신·증축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교도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장비 교체 및 설비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96억 5,100만원 중 3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시설보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시설보완	6,909	6,909	2,742	-	9,651	3,363	-	6,289	6,56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시설보완 사업은 각 교도소 별 작업장 신·증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을 단년도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김천소년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등 여러 교도소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김천소년교도소, 대구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의 3개 교도소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2022회계연도 시설보완 사업의 공사 지연 발생 기관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본예산	추경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대구교도소	2,095	2,095	-	2,095	74	2,021
김천소년교도소	1,380	1,380	-	1,380	-	1,380
강원북부교도소	20	20	2,742	2,762	322	2,440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사업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2

나. 분석의견

시설보완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은 법무부가 발주자로서 공정률 수준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불법 하도급계약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에 처음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²⁾ 27억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2021년 7월~10월에 실시 설계 이후 2021년 12월에 공사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현액 27억 6,200만원 중 3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2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다.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4,442	4,442	-	4,442	1,436	2,742	264
2022	합 계	20	20	2,742	2,762	322	-	2,440
	공사비(420-03)	20	20	2,707	2,727	322	-	2,405
	감리비(420-04)	-	-	35	35	-	-	3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2)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은 설계·공사 등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단년도로 편성하여 예정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다. 동 사업의 실시설계는 약 4개월이, 공사는 약 1년이 소요되므로, 설계와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 등 행정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1년 8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021년도에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예정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은 발주처(강원북부교도소)의 공사 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동 시설보완 사업은 공사 착공 이후 수급인(○○건설)에게 2021년에 선급금 9억 5,000만원 및 2022년에 기성금 3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은 하수급인(△△건설)에게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장비업체들이 2022년 6월 23일부터 공사를 거부함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때 공정표상 공정률은 37%였으나 실제 공정률은 12%에 불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처는 기성금 혹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지급(15일 이내 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처인 강원북부교도소는 이와 같은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발주처가 수급인과 직접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급인은 당초 계획과 달리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처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계획 공정률이 37%가 되는 시점까지 공정률이 12%에 불과하였다면 발주처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계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교도소에 작업장을 신·증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무지와 공사지의 거리가 멀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실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결과적으로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은 신규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월된 예산의 공사비 재이월이 불가하여 2022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2023년 예산으로 신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21년에서 2년 지연된 2023년 11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법무부는 발주자로서 공정률 수준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불법 하도급계약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3)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불법 하도급계약의 경우 발주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4) 발주처에서 조기에 불법 하도급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면 선급금을 2021년에 지급한 후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후 기성금 등을 지급시 이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리계약 체결 시 이와 같은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구교도소 및 김천소년교도소 관련 시설보완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추진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법무부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대구교도소 및 김천소년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에 설계비 및 공사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구교도소 사업의 경우 시설보완 사업비 20억 9,500만원 중 7,4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김천소년교도소 사업의 경우 시설보완 사업비 13억 8,0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구교도소 및 김천소년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의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구교도소	2,095	2,095	-	2,095	74	-	2,021
실시설계비(420-02)	100	100	-	100	74	-	26
공사비(420-03)	1,970	1,970	-	1,970	-	-	1,970
감리비(420-04)	25	25	-	25	-	-	25
김천소년교도소	1,380	1,380	-	1,380	-	-	1,380
실시설계비(420-02)	65	65	-	65	-	-	65
공사비(420-03)	1,300	1,300	-	1,300	-	-	1,300
감리비(420-04)	15	15	-	15	-	-	1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대구교도소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2022년 2월~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나 대구교도소(신축) 준공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속건물인 동 작업장 신축

공사 착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신축) 준공 허가 등이 완료(예정)되는 2023년 12월 이후에야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사업 중단에 따른 설계 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계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소년교도소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2022년 3월 설계계약 체결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 예비인증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어 설계진행 일정이 일차적으로 지연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2023년에 설계 업체에서 설계 완료 후 지자체와의 설계 준공 검사 과정에서 부지에서 구거⁵⁾가 발견되어 설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설계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는 동 사업의 재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⁶⁾

두 사업 모두 설계 중, 혹은 설계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본 건물의 준공 시기 혹은 사업부지의 지목 등과 같은 사항은 사업 추진 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하였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무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법무부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예산이 불용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시설보완 사업 추진 시에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5)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6) 구체적으로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거 해결을 위해 김천시와 건축 인허가, 구거 용도폐지 및 국토교통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73억 5,100만원 중 169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36,172	36,172	-	-	36,172	35,511	-	661	37,537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7,351	17,351	-	-	17,351	16,953	-	398	18,64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바라기센터는 지역별로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없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여 센터 운영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신규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6-303의 내역사업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현재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16개소의 경우 민간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각 센터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은 50%~70%이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현황]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7,351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16,741백만원
 - (위기지원형) 평균 433,545천원 × 15개소 × 보조율 50~70% = 4,478백만원
 - (아동형) 평균 660,327천원 × 7개소 × 보조율 50~70% = 3,101백만원
 - (통합형) 평균 702,718천원 × 18개소 × 보조율 50~70% = 8,696백만원
 - (거점) 466백만원 × 1개소 × 보조율 100% = 466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개보수비·기자재비): 364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이전 설치비: 246백만원**

자료: 법무부

2021년에 해바라기센터 2개소가 운영 종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전(신규)설치비 2억 4,600만원(1개소)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 해바라기센터 신규 유치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5차례 지자체 공모를 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의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센터 설치를 희망한 병원이 없어 이전설치비 전액이 불용되었다.

이와 같이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종료되고 신규 센터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동 사업의 운영방식 상 민간병원이 병원의 내부공간(330m²)을 무상으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에 운영 종료된 해바라기센터 현황]

구분	종료일	사유
서울북부 (삼육서울병원, 통합형)	2021.2.	병원 내 공간 부족,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센터 지속 운영 불가
서울중부 (국립중앙의료원, 통합형)	2021.12.	병원 측 인센티브 부족, 병원 공간 무상제공에 대한 부담감 등의 사유로 센터 지속 운영 불가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병원 내 공간에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민간병원은 16개소로 현재 별도 지원 없이 무상으로 내부공간을 임차해주고 있는데, 병원 내부 공간 무상사용으로 인한 민간병원의 재정 손실로 인하여 병원 공간을 센터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²⁾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소요 인건비 대비 부족한 운영비만을 지원해주고 있어, 병원의 운영 의지 감소 및 신규 센터 유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종료 및 신규 유치의 어려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병원 외의 센터 설치 방안 및 민간병원의 재정 손실 보전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 사업은 최근 해바라기센터 수와 센터별 인건비·운영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의 개소수와 센터별 소요 비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2년 해바라기센터 인건비, 운영비를 위하여³⁾ 편성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167억 4,1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미교부 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예산현액 중 5억 7,500만원을 불용하여, 총 7억 2,7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다.

2021년에도 동 사업은 1억 8,200만원을 미교부 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예산현액 중 4억 2,000만원을 불용하여, 총 6억 2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바 있다.

2) 법무부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환자 밀집도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 공간이 부족해지는 동시에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3)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이전 설치비 2억 4,600만원을 제외하였다.

[연도별 해바라기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연 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계획		불용액	집행액 (교부)	예산 현액	실집행		불용액 (반납)
	금액	센터수				금액	센터수	
'21	15,022	42 위기지원16/ 아동7/통합17 /거점1/신규1	182	14,840	14,840	14,420	41 위기지원16/ 아동7/통합17 /거점1	420
'22	16,741	41 위기지원15/ 아동7/통합18 /거점1	152	16,589	16,592	16,017	40 위기지원16/ 아동7/통합16 /거점1	575
'23	18,059	41 위기지원16/ 아동7/통합17 /거점1	2023년 6월 기준 해바라기센터 수: 40개					

자료: 법무부의 각 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가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의 평균 운영 예산은 집행액 기준으로 약 3억 9,100만원이므로 1개 센터 운영 예산 이상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불용이 발생한 것은 센터별 운영 예산을 과도하게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도의 경우 센터별 평균 운영 예산은 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집행상으로 센터별 평균 운영 예산은 4억원으로 나타나⁴⁾, 센터별로 약 800만원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의 경우에도 센터별 금액은 약 600만원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⁵⁾

4)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정 출석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2022년 4월부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영상증인신문 운영 비용을 동 사업 예산을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집행금액을 제외하면 센터별 지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괴리는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이 예산이 연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센터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센터별 관리의 부재도 적정 예산의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해바라기센터별 평균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편성			집행		
	금액 (A)	센터수 (B)	센터별 금액 (A/B)	금액 (C)	센터수 (D)	센터별 금액 (C/D)
2021	15,022	42	358	14,420	41	352
2022	16,741	41	408	16,017	40	400

자료: 법무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결산 공통요구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하면, 동 사업은 최근 해바라기센터 수와 센터별 인건비·운영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수와 센터별 필요 인건비·운영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세미나 개최 및 운영 사업¹⁾은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사업수행을 위한 본국과 개도국에서의 세미나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세미나 개최 및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ODA)	162	162	-	△34	128	108	2	18	156
세미나 개최 및 운영	28	28	-	△7	21	21	-	-	2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기존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으로 집행하던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를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컨퍼런스의 사업대상, 목적, 개최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세미나 개최 및 운영 사업을 통하여 ‘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의 주제는 “조정제도와 혁신(Innovations in Mediation)”으로 2022년 12월 13일 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5

[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명칭: 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 일시 및 장소: 12.13.(화) 13:00-18:00, 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
 - 주최: 법무부, 한국조정학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 참석(국내): 국제법무과장(법무부), 최재석 한국조정학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하태훈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 학계·실무계 전문가 등
 - 참석(해외): 싱가포르 법무부, 싱가포르조정센터, 캄보디아 법무부, 베트남 조정센터 소속 공무원 등
- 행사 내용 - “조정제도와 혁신(Innovations in Mediation)”
 - 총 3개 세션 진행
 - (제1세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과 과제
 - (제2세션)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의 확립
 - (제3세션)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자료: 법무부

동 행사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의 확립,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및 국제상사조정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조정제도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행사 내용]

- 기조발제 : ADR의 새로운 규율형태로서의 조정
- 제1세션 :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
 - [제1주제] 싱가포르조정협약 비준을 위한 점검사항
 - [제2주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 [제3주제]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 싱가포르의 사례(Jasmine Chin-Sabado 싱가포르 법무부 정책자문과장)
 - [제4주제] 자기 시대가 찾아온 사상에는 저항할 수 없다(Chuan Wee EMNG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 CEO)
 - [토론]

- 제2세션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의 확립
 - [제1주제] 형사조정위원의 양성 및 교육
 - [제2주제] Mediator Ethics and Competence: Creating a shared Definition and Standard for Korea and the greater region
 - [제3주제] 도급 분쟁조정 양태와 전문 조사인력의 육성
 - [토론]
- 제3세션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 [제1주제] 민사조정의 개선 방안
 - [제2주제] 가사조정의 개선 방안(김윤정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 [제3주제] Consideration of the Human Element - whar role should we place on psychology in mediation?
 - [토론]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여기서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²⁾

그러나 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는 각 발제, 토론 등의 내용이 개발도상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행사에 캄보디아 법무차관 및 베트남 조정센터장 및 부사무차장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의 과거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 예산으로 동 행사를 추진한 것은 2019년 제3회 컨퍼런스와 2021년 제6회 컨퍼런스로, 본래 타 사업인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1032-300)³⁾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던 사업으로 나타난다. 두 컨퍼런스 모두 제7회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조정협약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

3)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의 UNCITRAL, HCCH 등 국제거래규범성안도입 내역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인 통합양상에 따라 국제거래규범성안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과거 개최 실적]

구분	연도	주관 기관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3회	2019	법무부, 한국조정학회, 한국무역협회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싱가포르조정협약: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전략
6회	2021	법무부, 한국조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분쟁조정제도의 설계와 입법평가(싱가포르 조정협약과 국내 이행법률 설계 등)
7회	2022	법무부, 한국조정학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조정제도와 혁신(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과 과제,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의 확립,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주: 1회, 2회, 4회, 5회 컨퍼런스의 경우 법무부 예산으로 개최되지 않았음

자료: 법무부

종합하면 법무부는 기존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으로 집행하던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를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컨퍼런스의 사업대상, 목적, 개최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2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2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289	289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제처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9억 5,200만원이며, 이 중 94.7%인 40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법제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3,194	42,952	42,952	40,670	-	2,282	94.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제처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법제처의 자산은 201억 5,200만원, 부채는 2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1억 5,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0만원, 일반유형자산 143억 4,500만원, 무형자산 52억 8,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억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18억 3,300만원(10.0%)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이 5억 8,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20억 7,200만원 증가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한 200만원으로 유동부채 2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합계(a)	20,152	18,319	1,833	10.0
Ⅰ. 유동자산	1	582	△581	△99.8
Ⅱ. 투자자산	16	60	△44	△73.3
Ⅲ. 일반유형자산	14,345	14,459	△114	△0.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5,288	3,216	2,072	64.4
Ⅵ. 기타비유동자산	502	2	500	25,000.0
부채합계(b)	2	-	2	-
Ⅰ. 유동부채	2	-	2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20,150	18,319	1,831	10.0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19억 7,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19억 9,700만원, 관리운영비는 없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3억 9,600만원(3.4%) 증가한 419억 7,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법제처 고유사업 예산 집행액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3억 4,4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순원가는 정부입법총괄지원 프로그램(419억 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41,997	40,653	1,344	3.3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8	-	8	-
IV. 비배분수익	31	75	△44	△58.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1,975	40,579	1,396	3.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1,975	40,579	1,396	3.4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183억 1,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1억 5,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8억 3,100만원(10.0%)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419억 7,500만원이고,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38억 600만원, 조정항목이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440억 9,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법제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8,319	14,065	4,254	30.2
Ⅱ. 재정운영결과	41,975	40,579	1,396	3.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3,806	40,447	3,359	8.3
Ⅳ. 조정항목	△1	4,386	△4,387	△100.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0,150	18,319	1,831	10.0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법제정비 사업, ③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등이 있다.

인건비는 인건비 불용액이 지속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1억 9,700만원이 감액(223억 3,900만원 → 221억 4,200만원)되었고, 법제정비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사업 내실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7,300만원이 감액(13억 8,000만원 → 13억 700만원)되었으며,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반용역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000만원이 감액(2억 5,300만원 → 2억 4,300만원)되었다.

법제처는 ①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 법령·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행정기본법 보완·발전 및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등을 통해 행정 법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및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법제 혁신 사업과 ②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으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법제처는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 및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연례적인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비목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처는 최근 4년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등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및 비공개 규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은 법령정보제공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뉴미디어 매체, TV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제처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6억 8,400만원 중 6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2,177	2,143	-	±82	2,143	2,086	-	57	1,950
법제정책 알리기	700	684	-	±82	684	678	-	6	70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 및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연례적인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비목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예산 1031-300

법제처는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에서 만 나이 통일 및 「행정기본법」 3대 권리 구제 제도 홍보 영상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8,2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10.17)	법령정보 제공 (1031-300)	210-01 (일반 수용비)	82	법령정보 제공 (1031-300)	210-14 (일반 용역비)	만 나이 통일 및 「행정기본 법」 3대 권리 구제 제도 홍 보 영상 제작비용

자료: 법제처

[2022회계연도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법제정책 알리기	700	684	-	±82	684	678	-	6
- 상용임금(110-03)	27	27	-	-	27	26	-	1
- 일반수용비(210-01)	443	443	-	Δ82	361	361	-	-
- 특근매식비(210-15)	4	4	-	-	4	4	-	-
- 복리후생비(210-12)	0.4	0.4	-	-	0.4	0.4	-	-
- 일반용역비(210-14)	209	193	-	82	275	272	-	3
- 국내여비(220-01)	7	7	-	-	7	7	-	-
- 사업추진비(240-01)	4	4	-	-	4	4	-	-
- 고용부담금(320-09)	5	5	-	-	5	4	-	2

자료: 법제처

그런데 법제처는 법제정책 관련 영상 제작을 위해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2020년 5,900만원, 2021년 5,600만원, 2022년 8,2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내역사업 비목별 적정 소요액을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0~2021 회계연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목-세목 코드 (~에서)	금액	목-세목 코드 (~으로)	세목조정사유
2020	210-01(일반수용비)	59	210-14 (일반용역비)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영상 제작비용 지급
2021	210-01(일반수용비)	56	210-14 (일반용역비)	법령정비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홍보 영상 제작 비용 지급

자료: 법제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에 따라 2021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 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례적인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내역별 적정 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97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의 연례적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¹⁾은 법제처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등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21억 900만원 중 207억 7,100만원이 집행하고 13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22,142	22,109	-	±25	22,109	20,771	-	1,338	22,14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최근 4년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법제처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추경) 대비 집행률은 2019년 95.1%에서 2022년 93.9%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불용액도 2019년 9억 6,900만원에서 2022년 13억 3,8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01-100

[최근 4년간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19,680	19,680	-	±131	-	19,680	18,711	95.1	-	969
2020	22,199	21,412	-	-	-	21,412	19,892	92.9	-	1,520
2021	22,430	22,430	-	23	-	22,453	20,058	89.4	-	2,395
2022	22,142	22,109	-	±25	-	22,109	20,771	93.9	-	1,338

법제처는 연례적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정원(파견, 별도 정원 등) 대비 현원 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현원 과부족분은 2019년 △1명 → 2020년 2명 → 2021년 △15명 → 2022년 △6명²⁾ 수준임에도 2019년 9.6억원 → 2020년 15.2억원 → 2021년 23.9억원 → 2022년 13.3억원 규모로서 현원 부족분 1인당 불용액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현원 부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정·현원 및 인건비 불용사유]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정원 (A)	현원 (B)	과부족 (B-A)	인건비 불용액	인건비 불용사유
2019	223	222	△1	969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위 지원기구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해당 파견이 연장 없이 종료(2019.1.) * 별도정원 총 4명(고공단 나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2020	225	227	2	1,520	○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 8명의 별도정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2명(2020년 10월 이후 1명)만 별도정원으로 구성
2021	239	224	△15	2,395	○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상태가 지속
2022	239	233	△6	1,338	○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상태가 지속

주: 정원·현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 인원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 재구성

2) 고위공무원 +2명, 3~5급 △7명, 6급 이하 △1명

법제처 인건비는 정원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지체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²⁾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비공개 행정규칙의 목록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등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및 비공개 규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 부처가 비공개한 행정규칙의 수는 2019년 243건에서 2022년 25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등에도 불구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소관부처가 법제처에 통보하지 않는 한 법제처가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제처가 비공개 행정규칙을 통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최근 비공개 행정규칙의 제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

[최근 4년간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

(단위: 건)

소관 부처	전체규칙	2019	2020	2021	2022
대검찰청	310	87	51	61	59
국방부	333	62	61	59	60
우정사업본부	174	-	30	30	31
관세청	238	17	16	16	16
법무부	333	19	14	11	11
통계청	1,180	8	8	8	8
해양수산부	1,266	6	7	6	6
해양경찰청	360	2	6	6	9
국세청	183	4	5	6	5
외교부	187	2	4	5	6
이 외 부처	14,313	36	46	50	47
합 계	18,877	243	248	258	258

주: 1. 2022년 기준 비공개 행정규칙이 5건 이상인 부처를 순서대로 나열함.

2. 각 연도 말(12.31.) 기준

자료: 법제처

3) 법제처는 분기별로 각 기관에 비공개 행정규칙 제명 및 목록을 요청하여 해당 목록을 현행화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문을 공개하도록 개선의견(권고, 요청, 리뷰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관 부처별 비공개 사유 현황]

(단위: 건)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¹⁾)	건 수
제9조제1항제1호	5
제9조제1항제2호	135
제9조제1항제4호	54
제9조제1항제5호	22
제9조제1항제6호	1
제9조제1항제7호	28
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	1
제9조제1항제2호및제4호	4
제9조제1항제3호및제5호	2
제9조제1항제4호및제5호	2
제9조제1항제5호및제7호	3
제9조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	1
합 계	258

주: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단서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 생략)

이에 법제처는 2019~2022년 총 6개 기관에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제명(題名)만 제출된 비공개 행정규칙 69건의 전문을 요청하였으나, 이 중 제출된 행정규칙은 36건, 별도의 제출 없이 대외 공개된 행정규칙은 7건, 미제출된 행정규칙은 22건, 폐지되어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행정규칙은 4건 등 비공개 행정규칙 전문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2022년도 비공개 행정규칙 전문 요청 현황]

(단위: 건)

연도	제출	공개	미제출	폐지	합 계
2019	3	2	10	1	16
2020	9	1	-	2	12
2021	12	-	12	1	25
2022	12	4	-	-	16
합 계	36	7	22	4	69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비공개 행정규칙의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가 되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하여 법제처장이 요구할 경우 비공개 행정규칙 전문을 제출하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⁴⁾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향후 법제처는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비공개 사유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경과
 ○ 최초 입법예고일: '20.5.6.~'20.6.15.
 ○ 재입법예고일: '20.8.5.~'20.8.13.
 ○ 진행상황: 법무부 등 이견으로 개정을 중단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1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 4,300만원을 수납(수납률 100.0%)하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다.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143	143	-	-	100.0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37억 2,100만원으로, 이 중 183억 200만원을 집행(집행률 77.2%)하고, 16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999	19,777	23,721	18,302	1,633	3,786	77.2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산은 전년 대비 5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9억 3,0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9억 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91억 1,7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8억 2,3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 증가한 1억 1,600만원으로 유동부채 1억 1,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9억 2,600만원이 증가한 138억 1,3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8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44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6,000만원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A)	2021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930	8,892	5,038	56.7
	유동자산	1,159	6,061	△4,902	△80.9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3,073	2,250	823	36.6
	무형자산	9,697	580	9,117	1,571.9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116	5	111	2,220.0
	유동부채	116	5	111	2,22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3,813	8,887	4,926	55.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885	1,002	2,883	287.7
	재정운영순원가	14,406	7,246	7,160	98.8
	재정운영결과	14,406	7,246	7,160	98.8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38억 8,500만원, 관리운영비 107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억8,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44억 6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회계연도
I. 프로그램순원가	3,885
II. 관리운영비	10,709
III. 비배분비용	-
IV. 비배분수익	18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4,406
VI. 비교환수익 등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40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8억 8,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38억 1,300만원이다.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183억 100만원, 기타 재원조달 11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1억 4,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I. 기초순자산	8,887
II. 재정운영결과	14,40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9,333
IV. 조정항목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3,813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수사지원및수사일반 사업**, ② **공수처 운영 인건비 사업** 등이 있다.

수사지원및수사일반 사업은 각종 수사 관련 위원회 비용 과다 계상 등을 고려하여 1,100만원이 감액(25억 3,900만원 → 25억 2,800만원)되었고,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편성 산출근거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2억 4,300만원이 감액(80억 7,100만원 → 78억 2,8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①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 ② **공판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사업은 디지털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의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전자적증거보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억 3,200만원 증액(13억 500만원 → 33억 3,700만원)되었고, 공판활동지원 사업은 공수처법에 부합하는 기능별 예산구조를 정립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판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설함으로써 1억 300만원 증액(순증)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 시행된 이후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기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총 7개 세부사업에서 공수처 정보화시스템 구축,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수사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예산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았던 민원소통 전문관 운영 사업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9.0% 수준으로 부진하므로, 공수처는 집행 실적 및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특성상 방호 외에 당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당직을 운영하고 일·숙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자 이를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용역 사업에 집행하였고, 연구용역 과제 선정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불용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¹⁾은 범죄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사역량 강화 지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3억 6,300만원 중 1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528	2,363	-	-	2,363	1,181	45	1,137	1,970
일반수용비	745	637	-	△11	626	197	7	415	43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공수처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11-301

1-1.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

나. 분석의견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았던 민원소통 전문관 운영 사업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민원소통 전문관 운영 수당 및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일반수용비(210-01목) 등에서 2022년 5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세목조정을 하였다.

[2022회계연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목-세목 코드 (~에서)	금액	목-세목 코드 (~으로)	세목조정사유
세목조정 (2022.5.4)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14	210-01 (일반수용비)	민원소통 전문관 운영
세목조정 (2022.8.23)	210-01 (일반수용비)	22	210-14 (일반용역비)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 영상 콘텐츠 제작
세목조정 (2022.9.26)	210-01 (일반수용비)	3	210-14 (일반용역비)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식 용역

자료: 공수처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민원소통 전문관 운영, 종합민원실 개소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수용비를 세목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낮은 용역비로 지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2022년도에 민원 만족도·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 및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사기관 퇴직 공무원²⁾ 또는 퇴직경찰공무원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퇴직 후 4년 이내, 수사기관 6급 이상 퇴직자, 추천일 현재 다른 업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자

[2022회계연도 민원 소통 전문관 운영 현황]

구분	계약기간	업무	활동비	예산과목
채용(A)	2022.6.13. ~ 2022.10.18.	민원인 상담, 기 처리 민원 설명 등	1일 8만원 (1일 5시간 근무)	일반수용비 (210-01)
채용(B)	2022.11.3. ~ 2023.11.3.			

자료: 공수처

공수처는 2023년도 예산에도 민원 소통 전문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원소통관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2023년에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다.

[2022년~2023년 민원소통 전문관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2	1,600	1,680	1,760	1,600	800	1,600	1,760	10,800
2023.4.	1월	2월	3월	4월	-	-	-	계
	1,568	1,600	1,760	1,520	-	-	-	6,448

자료: 공수처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공수처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 수사 지원 위원회 운용 예산 과다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나. 분석의견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9.0% 수준으로 부진하므로, 공수처는 집행 실적 및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내 위원회 운영 경비 중 일반수용비 2억 3,400만원 중 2,100만원(9.0%)을 집행하고 2억 1,300만원(91.0%)을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심의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341	234	-	-	234	21	-	213
심의위원회 운영	341	234	-	-	234	21	-	213

자료: 공수처

위원회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시 공수처는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적정 소요액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의 불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도 공수처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실적]

(단위: 건)

위원회	2021		2022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사심의위원회	-	1	15	5	처장요청으로 소집
수사자문단	-	1	15	5	처장요청으로 소집
영장심의위원회	-	1	15	-	법에 근거
공보심의협의회	-	6	20	5	-
감찰위원회	-	-	2	2	2022년 구성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1	7	1	대통령령에 근거

주: 영장심의위원회는 「공수처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설치되고,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됨.

자료: 공수처

[2021~2023.5 위원회 운영 사업 중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	-	-	-	246	246	3	-	243
2022	341	234	-	-	-	234	21	-	213
2023.5	234	234	-	-	-	234	9	-	225

자료: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개최 예산을 15회로 계획하였으나 한 차례의 개최 실적도 없고, 공보심의협의회는 20회로 계획하였으나 5회 개최한 것은 예산 추계를 과도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예산 편성 시 집행 실적 및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과도한 불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수처 일·숙직비¹⁾는 공수처의 일직 및 숙직근무자에게 일·숙직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2022년도 예산현액 5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수처운영 기본경비(총액)	1,718	1,718	-	59	1,777	1,588	-	189	1,707
일 · 숙직비	-	-	-	-	5	-	-	5	1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공수처

나. 분석의견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특성상 방호 외에 당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당직을 운영하고 일·숙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당직은 일·숙직으로 구성되며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및 각 부처의 자체 규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도 별도의 관련 규칙을 두고 있다.²⁾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11-301

2) 국회의 경우 「국회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내규(국회사무처내규)」가 있음.

공수처는 2022년 일·숙직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2023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2023 공수처 일·숙직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17	17	-	-	17	-	-	17
2022	5	5	-	-	5	-	-	5
2023.4	10	10	-	-	10	-		

자료: 공수처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방호근무자를 선발하여 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호원과 담당 직원이 핫라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숙직비는 필요시 집행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와 일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에 관한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경비원 등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문서의 수발·인계·관리, 전화민원의 응대, 공무원 비상소집 등 대응을 위한 정상적인 일·숙직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³⁾

또한, 공수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거나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등의 당직근무 실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⁴⁾

3) 검찰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대검찰청예규)」가 있고,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제20조)하고 있어 당직 근무에 관한 규정이 있음.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당직의 편성)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공수처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 사	수사관	행정직	계
정 원	25	40	20	85
현 원	21	38	20	79

주: 2022년 23. 31 기준

자료: 공수처

따라서, 공수처가 2023년 5월 현재까지 당직 근무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당직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사업은 전자적 증거의 수집, 선별, 압수 등을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3억 4,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3,337	3,337	38	-	3,375	2,312	855	208	1,170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개발	345	345	-	-	345	145	345	200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공수처

나. 분석의견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자 이를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용역 사업에 집행하였고, 연구용역 과제 선정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불용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사업은 전자적 증거의 수집, 선별, 압수 등을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을 위한 맞춤형 포렌식 도구 개발 사업으로 공수처는 예산현액 3억 4,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개발	345	345	-	-	345	145	-	200
일반연구비(260-01)	345	345	-	-	345	145	-	200

자료: 공수처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시스템 예산은 2022년 1월 국가보안기술 연구소와 협조하여 동 기관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어 해당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동 사업의 예산 불용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인 증거 압수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연구용역에 과제 3건을 추진하여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
1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개발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예비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5,454	경쟁후 수 의
2	포렌식 선도기관의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활용 및 효율성 분석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경쟁후 수 의
3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개발 동향 및 도구별 기능 비교 분석 연구	한국포렌식학회	49,949	경쟁후 수 의

자료: 공수처 제출자료 재작성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포렌식 도구 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유사성도 낮은 연구용역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수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를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단일 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긴급공고로 추진한 3개 연구용역 계약은 각각 2022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2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7월1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고가 진행되었으며, 단일 응찰에 의하여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제안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을 단축(40일→10일)하고, 단일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의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 및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우려될 수 있다.

공수처는 동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의2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일응찰에 의하여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두 규정 모두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조달기업 지원’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입찰 참가 가능성 있는 계약상대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단일 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감사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억 1,600만원이며, 5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16	716	716	564	564	-	-	1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감사원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54억 4,400만원이며, 이 중 93.9%인 1,272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6,307	135,221	135,444	127,204	1,568	6,672	93.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clipse2@assembly.go.kr, 6788-4691)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감사원의 자산은 2,254억 3,900만원, 부채는 13억 9,900만원으로 순자산은 2,240억 4,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5억 9,900만원, 일반유형자산 2,189억 5,700만원, 무형자산 35억 7,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53억 8,300만원(2.4%) 증가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등 자산 감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건설증인자산 등의 자산 증가분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1,100만원, 장기충당부채 13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원(12.6%)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80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5,439	220,056	5,383	2.4
Ⅰ. 유동자산	2,599	1,025	1,574	153.6
Ⅱ. 일반유형자산	218,957	212,682	6,275	3.0
Ⅲ. 무형자산	3,576	5,978	△2,402	△40.2
Ⅳ. 기타비유동자산	307	371	△64	△17.3
부 채	1,399	1,243	156	12.6
Ⅰ. 유동부채	11	10	1	10.0
Ⅱ. 장기충당부채	1,388	1,233	155	12.6
순 자 산	224,040	218,813	5,227	2.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448억 4,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453억 7,900만원, 비배분비용이 900만원이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억 2,500만원, 비배분수익 1억 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73억 9,500만원(13.6%) 증가한 1,448억 4,4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항목 중에서 인건비 1억 9,000만원, 여비교통비 12억 2,300만원 등 73억 2,3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한 반면, 감사교육원의 교육비 등 수익이 400만원 감소한 결과이고, 이와 함께 전기에 발생한 자산재평가 평가손실 환입의 당기 미발생으로 비배분수익이 12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144,954	139,790	5,164	3.7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9	11	△2	△18.2
IV. 비배분수익	118	12,351	△12,233	△99.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44,844	127,449	17,395	13.6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4,844	127,449	17,395	13.6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2,188억 1,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240억 4,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2억 2,800만원(2.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 재정운영결과(순자산 차감항목)는 1,448억 4,4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원의 조달및이전 항목(순자산 가산항목)이 1,501억 1,8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조정항목이 4,6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조달및이전 항목의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272억 400만원, 공무원 연금 등 국가부담액 234억 7,800만원 등 1,506억 8,200만원의 재원을 조달하였고, 국고이전지출 등 △5억 6,400만원의 재원을 이전하였으며, 조정항목은 유형자산(토지) 재평가이익 중 당기 감가상각 환입 △4,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감사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18,812	178,710	40,102	22.4
II. 재정운영결과	144,844	127,449	17,395	13.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50,118	142,875	7,243	5.1
IV. 조정항목	△46	24,676	△24,722	△100.2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24,040	218,812	5,228	2.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기본경비, ②국제교류협력강화, ③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 등이 있다.

기본경비의 ‘청·관사 임차료’ 예산이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22년에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2,000만원 감액(132억 1,700만원 → 131억 9,700만원) 되었고, 국제교류협력강화의 ‘ASOSAI·INTOSAI 등 국제교류경비’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예산안 편성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850만원이 감액(6억 4,500만원 → 6억 3,650만원) 되었다.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의 ‘제1별관 재건축 관련 임차료 등’ 사업은 임차료 산정근거가 되는 서울중앙우체국의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3,000만원 감액(28억 6,600만원 → 28억 3,600만원)되었다.

국회가 「2022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감사원 관련 사항은 없었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면서 감사환경 변화 및 감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라 감사활동 관련 경비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신규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사원 심사청구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비율이 높으며, 특히 국세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441일에 달하는 등 심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행정심판전치주의로 인하여 심사청구 지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 수입에 있어 감사원 전·현직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세입 처리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심사청구 법정 결정기간 준수 필요

가. 현 황

감사활동경비 사업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직무감찰, 심사청구 처리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173억 2,500만원 중 14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9,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경비	18,295	17,509	176	△360	17,325	14,947	88	2,290	17,07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감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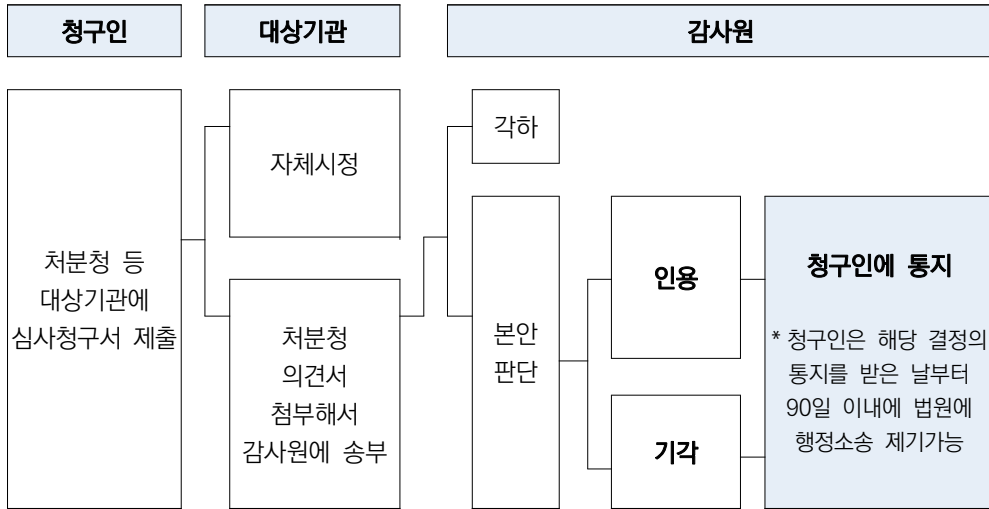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가려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이다.

청구인은 처분청 등 대상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대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거나, 의견서를 첨부해서 감사원으로 송부하고 감사원은 심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심사청구 업무 절차]



자료: 감사원

감사원 심사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접수 건수는 2018년 1,883건에서 2022년 5,528건으로 증가하였고, 처리 건수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4,337건으로 증가하였다.²⁾

[심사청구사항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완료						처리 중
	계	신규 접수	전년 이월	계	본안 심리			각하	취하	
					소계	인용	기각			
2018	1,883	1,150	733	1,369	1,064	29	1,035	162	143	514
2019	1,406	892	514	991	678	37	641	250	63	415
2020	1,893	1,478	415	1,318	967	20	947	263	88	575
2021	5,311	4,736	575	1,789	367	15	352	1,343	79	3,522
2022	5,528	2,006	3,522	4,337	580	175	405	3,620	137	1,191

자료: 감사원

2) 감사원에 따르면, 이러한 급격한 접수 및 처리 건수의 증가는 2021년 및 2022년에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 청구건(4,656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나. 분석의견

감사원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비율이 국세 사건 87%, 산재 사건 75.9%, 기타 사건 53%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심사청구가 인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처리기간 미준수율이 100%에 달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조기에 한다는 등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법정기간 내 처리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심사청구 지연 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제43조제1항3)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감사원에 대하여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제3항4)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개년 간 심사청구 법정기간 내 처리 현황을 보면, 2018 ~ 2020년까지의 기간 내 처리비율은 26.3 ~ 40.2%로 매우 저조하였고, 2021년부터 70%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법정기간 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

구분	총 처리 건수	기간 내 처리		기간 초과		평균처리 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	1,369	369	27.0	1,000	73.0	268
2019	991	398	40.2	593	59.8	249
2020	1,318	346	26.3	972	73.7	182
2021	1,789	1,427	79.8	362	20.2	83
2022	4,337	3,400	78.4	937	21.6	114

자료: 감사원

3)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및 2022년에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 청구건(4,656건)이 접수⁵⁾되어 2021년 1,213건, 2022년 3,443건이 단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즉, 2018년 58건에 불과했던 지방세 처리건수가 2022년 3,5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지방세 사건의 원인이 동일한 사유로 제기되어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단순 처리가 되면서 “법정기간 내 처리건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전반적인 심사청구의 기간 내 처리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건별 기간 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

구분	총 처리 건수	기간 내 처리		기간 초과		평균처리 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	계	1,369	369	27.0	1,000	73.0
	국세	714	261	36.6	453	63.4
	지방세	58	7	12.1	51	87.9
	산재	489	36	7.4	453	92.6
	기타	108	65	60.2	43	39.8
2022	계	4,337	3,400	78.4	937	21.6
	국세	276	36	13.0	240	87.0
	지방세	3,523	3,196	90.7	327	9.3
	산재	370	89	24.1	281	75.9
	기타	168	79	47.0	89	53

자료: 감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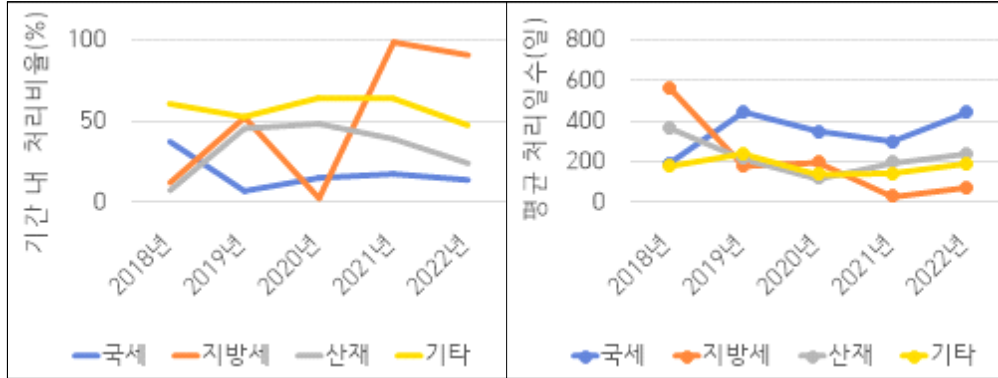
실제로, 사건 유형별로 국세 사건의 경우 기간내 처리비율은 36.6%에서 13%로 하락하고, 평균 처리기간은 190일에서 441일로 증가하였고, 기타 사건에 대한 기간 내 처리비율도 하락하였고, 평균 처리일수는 증가하였다.

평균적인 처리 일수가 441일로 가장 긴 국세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세에 대해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관계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⁶⁾,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5)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 처리와 관련된 건”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결정이 지연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심사청구 사건 유형별 기간 내 처리비율 및 평균 처리일수]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세 사건에 대한 불복 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조세심판원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209일의 소요기간이 걸렸음에 반해, 감사원은 2배 이상인 441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심판원이 아닌 감사원에 청구한 민원인이 평균적으로 7개월 이상 늦은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국세 불복 유형별 심사기간 현황]

(단위: 건,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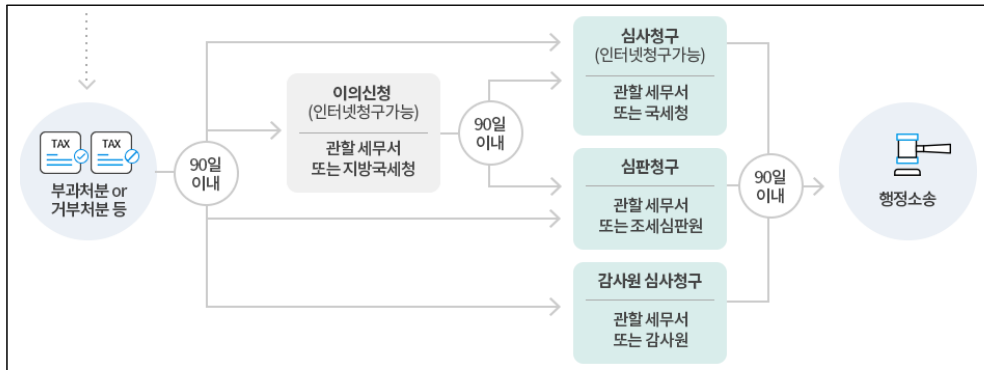
구분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감사원)		
	평균 소요기간	총처리건수	기간도과 건수(비율)	평균 소요기간	총처리건수	기간도과 건수(비율)
2018	195	4,748	3,867(81.4)	190	714	453(63.4)
2019	182	4,236	3,311(78.2)	444	178	167(93.8)
2020	172	8,612	7,687(89.3)	349	203	174(85.7)
2021	206	6,334	4,701(74.2)	299	156	130(83.3)
2022	209	9,201	8,703(94.6)	441	276	240(87.0)

자료: 감사원, 국세청

- 6)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의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특히, 감사원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른 심사청구⁷⁾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소송은 모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와 같이 지연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⁹⁾

[조세처분 불복 시 처리절차(필요적 전치주의)]



자료: 국세청,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한편, 심사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만 따로 나누어 보면, 처리 지연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2022년 감사원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인용 결정의 경우에는 실제 법정기간 내 처리가 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 취지가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심사청구가 지연된다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7) 조세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8) 국세는 종전부터 도입되었으나, 지방세의 경우 2021년부터 도입되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증가할 수 있다.

9) 한편,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청구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주의라든가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인용된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인용사건		인용사건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 (b/a*100)
	건 (a)	법정기간 내 처리 (b)	
국세	128	-	0
지방세	43	-	0
산재	3	-	0
기타	1	-	0
계	175	-	0

자료: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용 사건의 법정기간 내 처리 준수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관리하여 심사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심사청구의 심사 지연 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현행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¹⁰⁾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지연도 행정소송이 바로 가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334호, 2022. 9. 13. 제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가. 현 황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¹⁾은 감사교육원이 실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체감사 및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에 따른 수입금과 교육시설 임대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세입예산 항목으로 감사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5억 2,000만원 중 4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장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520	520	520	425	425	-	-	100
								48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 기준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시설 이용료를 부과 징수한 예가 없으며, 소속 전 현직 직원 및 그 가족에게는 생활관 이용료 조차도 받지 않아 공공기관 건물 등의 사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교육원은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교육기본계획)에 의한 징수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임대료를 받고 있다. 교육원의 교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대강당 등의 강의시설, 기타 테니스장, 축구장의 체육시설, 생활관 등의 휴양시설의 이용료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4-69-691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 현황]

구분	이용료	구분	이용료
대강당	200,000원/일	소강의실	50,000원/일
대강의실	100,000원/일	분임토의실	20,000원/일
세미나실	150,000원/일	테니스장	60,000원/일
전산교육실	100,000원/일	축구장	100,000원/일
중강의실	80,000원/일	생활관	20,000원/일

자료: 감사원

그러나, 최근 5개년간 이러한 감사교육원 시설에 대한 이용료 수입은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자가 실제로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인지, 이용은 하였지만 제대로 된 징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²⁾

[2018~2022회계연도 시설이용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대강당	-	-	-	-	-	-
대강의실	-	-	-	-	-	-
세미나실	-	-	-	-	-	-
IT교육실	-	-	-	-	-	-
중강의실	-	-	-	-	-	-
소강당	-	-	-	-	-	-
분임토의실, 다목적구장	-	-	-	-	-	-
테니스장	-	-	-	-	-	-
축구장	-	-	-	-	-	-
생활관	58,860	59,880	5,010	260	240	124,250
총계	58,860	59,880	5,010	260	240	124,250

자료: 감사원

2)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교육원은 교통 불편 등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물 등에 대한 외부인 등의 실제 이용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교육원은 캠핑촌이 형성되어 있는 파주시 마장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모임·휴양 시설로서의 생활관 이용 수요가 있다. 2022년에는 감사원 소속 직원 등 1,981명이 가족 모임 등의 목적으로 총 556건 이용하였다.

[감사교육원 위치]



[2022년 감사교육원 생활관 시설이용 현황]

구분	교육·연수 목적		가족모임·휴양 목적		합계	
	사용건수 (A)	사용인원 (B)	사용건수 (C)	사용인원 (D)	사용건수 (A+C)	사용인원 (B+D)
감사원 직원 이용	-	-	556건	1,981명	556건	1,981명

자료: 국회, 감사원, 국방부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 내부규정을 근거³⁾로 소속 전·현직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세입

3) 「감사교육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사용료) ④ 전·현직 감사원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2항의 사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목으로 징수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속초수련원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통계교육원 및 국회 고성연수원의 경우에도 3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여 기타잡수입 세입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각 부처 직원 대상 교육연수시설 생활관 이용료 현황]

구분	서울시 속초수련원	통계교육원	국회 고성연수원	감사교육원
이용료	20,000원/일	30,000원/일	30,000원/일	무료

자료: 국회, 감사원, 국방부

특히,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원 소속 직원에게 이용료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소유 건물에 대한 사적용도 사용금지 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u>감사원</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u>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감사원 교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실질적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조치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동법의 취지에 따라 감사원 직원에 대한 대가 없는 부당한 사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¹⁾은 개발도상국 내 감사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감사제도 연수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1억 9,7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기구 역량강화	297	197	-	-	197	54	-	143
								29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동 사업을 통해 매년 개발도상국 중 대상 국가를 선정한 후 해당국가 감사원(최고감사기구)의 관리자급 직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연수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외여비 등이 집행되지 않아 1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해외 감사기구 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면서,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에 강의실 및 회의장 등이 있음에도 호텔 회의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강의실로 사용하였고, 소규모 업무 대행의 대가인 통역비를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용임금비목으로 집행하는 등 집행방식이 일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5-323

감사원은 필리핀, 탄자니아, 튀르키예 3개국의 최고 감사기구 관리자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ODA사업으로 온라인 방식(실시간+녹화강의)의 감사관리자 연수 사업을 실시하였다.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 추진 현황]

국가	기간	대상자	비고
필리핀	2022. 7. 7. ~ 7. 15. (주말 제외)	필리핀 감사원(COA) 관리자급 직원 총 14명	오전은 실시간 강의, 오후에는 녹화 강의 또는 그룹 토론 위주 로 실시
탄자니아	2022. 8. 4. ~ 8. 12. (주말 제외)	탄자니아 감사원(NAOT) 관리자 급 직원 총 14명	
튀르키예	2022. 9. 22. ~ 9. 30. (주말 제외)	튀르키예 감사원(TCA) 관리자급 직원 총 12명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감사원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코리아나 호텔과의 임차 계약을 하였는데, 온라인 강의 시 강의실 및 그룹 토론 회의실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추진하는 감사교육원에도 강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1만원을 들여 서울 시내 호텔에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별도 임차를 한 것이 적절한 예산집행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있다.²⁾

[임차 강의실 전경]



자료: 감사원

- 2) 감사원은 감사교육원의 경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제 온라인 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고, 본원의 경우에도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시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호텔 등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호텔 등 임차 지양 관련 규정〕

□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u>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u>

자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96

한편,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국과의 온라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통역비 약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 감사 관련 강의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면 한-영 통역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고, 각 국가별로 약 500만원의 통역비를 일용임금(110-04)비목으로 집행하였다.³⁾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 집행내역]

비목	세부내역	지급액
일용임금 (110-04)	3개 과정(필리핀, 탄자니아, 튀르키예) 통역비	15,220,000
일반수용비 (210-01)	강의에 대한 강사로 지급 등	14,703,000
임차료 (210-07)	연수장(코리아나호텔) 임차료	10,010,000
사업추진비 (240-01)	사업관련 식사, 기념품구입	2,692,000
일반용역비 (210-14)	연수과정 현지 대행용역비	11,153,000
합계		53,778,000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감사원은 KOICA의 '통역료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 관련 통·번역 경험이 풍부한 1인에게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용임금은 일시적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집행하는 비목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집행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시적 고용관계에 따른 고용부담금⁴⁾ 등도 별도의 비목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으며⁵⁾, 고용부담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용임금(110-04)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통역비는 소규모 업무 대행의 대가로 전문가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용임금으로 통역비를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목별 지침〕

구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10-04목(일용임금)에 계상

자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00

따라서, 감사원은 동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감사원 또는 감사교육원의 강의 및 회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통역비 집행에 있어서 비목에 맞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4) 1개월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5)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였다.



대법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94억 5,000만원이며, 7,249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7,234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84,047	484,047	484,047	407,579	406,097	1,481	-	99.6
등기특별회계	305,403	484,047	305,403	317,326	317,306	20	-	100.0
합계	789,450	789,450	789,450	724,905	723,403	1,501	-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426억 8,900만원이며, 이 중 95.7%인 1조 9,547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9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717,789	1,712,674	1,729,428	1,705,532	9,881	14,015	98.6
등기특별회계	305,403	305,403	313,261	249,256	3,078	60,927	79.6
합계	2,023,192	2,018,077	2,042,689	1,954,788	12,959	74,942	95.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1,825억 9,500만원이며, 1,346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인 1,332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 9,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82,595	182,595	182,595	134,681	133,285	1,396	-	99.0

자료: 대법원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1,874억 2,000만원이며, 이 중 71.1%인 1,33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82,595	182,595	187,420	133,285	1,896	6,372	71.1

자료: 대법원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153억 5,700만원 (11.9%)이 감소한 8,56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50억 3,500만원(6.0%)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788,126	789,450	789,450	723,403	△66,047	△64,723
기금	123,597	182,595	182,595	133,285	△49,310	9,688
합계	911,723	972,045	972,045	856,688	△115,357	△55,03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2022회계연도 대법원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5억 9,900만원(5.1%)이 감소한 2조 880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12억 1,600만원 (1.5%)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933,260	2,023,192	2,018,077	1,954,788	△63,289	21,528
기금	123,597	182,595	182,595	133,285	△49,310	9,688
합계	2,056,857	2,205,787	2,200,672	2,088,073	△112,599	31,21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대법원의 자산은 8조 6,384억 9,400만원, 부채는 610억 2,500만원으로 순자산은 8조 5,774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55억 100만원, 일반유형자산 8조 3,917억 2,600만원, 무형자산 434억 8,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77억 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11억 7,900만원(1.3%)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자산이 42억 7,800만원, 무형자산이 44억 9,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310억 7,400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510억 2,7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96억 9,900만원, 장기차입부채 303억 900만원, 장기충당부채 3억 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07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6억 2,000만원(2.7%)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부채가 82억 4,200만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차입부채가 71억 500만원, 장기충당부채가 4,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27억 1,6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A)	2021회계연도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8,638,494	8,749,673	△111,179	△1.3
Ⅰ. 유동자산	125,501	121,223	4,278	3.5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8,391,726	8,542,753	△151,027	△1.8
Ⅳ. 사회기반시설	-	-	-	0.0
Ⅴ. 무형자산	43,489	38,993	4,496	11.5
Ⅵ. 기타비유동자산	77,778	46,704	31,074	66.5
부 채	61,025	59,405	1,620	2.7
Ⅰ. 유동부채	19,699	27,941	△8,242	△29.4
Ⅱ. 장기차입부채	30,309	23,204	7,105	30.6
Ⅲ. 장기충당부채	302	260	42	16.2
Ⅳ. 기타비유동부채	10,716	8,000	2,716	34.0
순 자 산	8,577,468	8,690,268	△112,800	△1.3
Ⅰ. 기본순자산	3,931,501	3,931,501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867,850	856,227	11,623	1.4
Ⅲ. 순자산 조정	3,778,117	3,902,539	△124,422	△3.2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7,026억 6,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442억 6,1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7,845억 7,500만원, 비배분비용 5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96억 9,100만원, 비배분수익 5,410억 6,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759억 9,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비교환수익)는 1조 7,02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억 6,200만원(2.9%) 증가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1,141억 5,200만원 감소하였으나 관리운영비가 969억 8,000만원 증가하고 비배분수익이 596억 3,100만원 감소, 비교환수익이 84억 7백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재판활동 지원 프로그램(2,351억 1,500만원)과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1,582억 9,400만원),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1,411억 6,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4,110억 6,700만원과 경비 3,735억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5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5,307억 4,300만원, 이자수익 10억 600만원, 자산처분이익 3억 800만원, 기타수익 90억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 수익등은 제재금수익 4억 6,700만원과 기타재원조달및이전 755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34,570	648,722	△114,152	△17.6
가. 프로그램 총원가	544,261	655,856	△111,595	△17.0
나. 프로그램 수익	9,691	7,135	2,556	35.8
II. 관리운영비	1,784,575	1,687,595	96,980	5.7
III. 비배분비용	580	3,085	△2,505	△81.2
IV. 비배분수익	541,060	600,691	△59,631	△9.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778,665	1,738,710	39,955	2.3
VI. 비교환수익 등	75,999	84,406	△8,407	△10.0
VII. 재정운영결과(V-VI)	1,702,667	1,654,305	48,362	2.9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조 6,902억 6,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조 5,774억 6,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128억(1.3%)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조 7,026억 6,7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1,244억 2,2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7,142억 8,9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2조 3,640억 700만원과 국고이전 지출 등 재원의 이전 6,497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1,244억 2,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대법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8,690,268	6,959,054	1,731,214	24.9
Ⅱ. 재정운영결과	1,702,667	1,654,305	48,362	2.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714,289	1,616,075	98,214	6.1
Ⅳ. 조정항목	(124,422)	1,769,444	△1,893,866	△107.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8,577,468	8,690,268	△112,800	△1.3

자료: 대법원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82억원 전출되었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반회계	
세입	4,061(4,840)
세출	17,055(17,29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규모	1,333(1,874)

등기특별회계	
세입	3,173(3,054)
세출	2,493(3,133)

전출 217억원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소관)

주: 1. 총계기준

2. ()내 수치는 예산현액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재판절차비용지원, ②교육원 기본경비, ③연수원 기본경비, ④국선변호료 지원, ⑤전문재판 운영, ⑥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⑦공탁전산 시스템 개발 및 운용 등이 있다.

세출예산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5,000만원이 감액(362억 9,600만원 → 362억 4,600만원)되었고, 교육원 기본경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100만원이 감액(16억 7,200만원 → 16억 6,100만원)되었고, 연수원 기본경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300만원이 감액(26억 9,400만원 → 26억 9,100만원)되었고,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4억 5,300만원이 감액(614억 5,300만원 → 610억원)되었고, 전문재판 운영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원이 감액(39억 8,400만원 → 38억 8,400만원)되었고,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41억 200만원이 감액(157억 2백만원 → 116억원)되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의 공탁전산 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 2,900만원이 감액(41억 7,800만원 → 39억 4,900만원)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일반 인건비 사업 등이 있다. 일반 인건비 등 4개 세부사업은 연가보상비 지급 예산을 1일분 감축(7일 → 6일)함에 따라 19억 9,100만원이 감액(1조 3,297억 5,400만원 → 1조 3,277억 6,300만원)되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②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③ 재판이 중심이 되는 독립되고 민주적인 법원, ④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⑤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⑥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의 사업추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대법원 판례상 패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필요성이 낮고, 실제 집행률도 매년 20~30%대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비의 잔액 등을 활용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직접 사업 시 1년간 3,7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6개월간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험에 8,5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둘째, 대법원은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아니하고 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무분야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및 사업 축소 필요

가. 현 황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사업¹⁾은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하여 부당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방법으로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일반경비지원	40,209	39,799	85	416	40,300	39,696	63	540	40,376
법관 등 상대 부당 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105	105	-	15	120	120	-	-	10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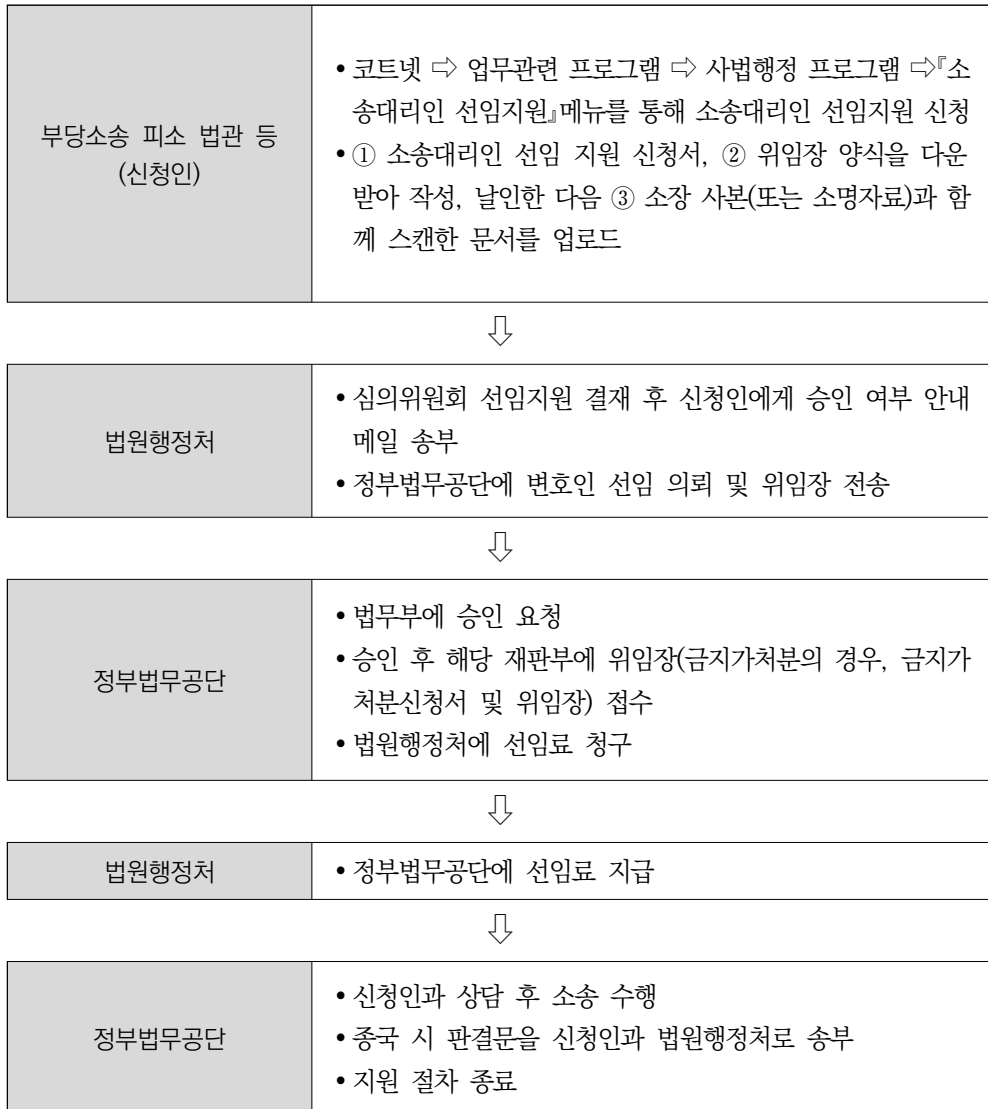
자료: 병무청

부당소송에 피소된 법관 등이 선임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임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정부법무공단에 선임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안이 명백하고,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수도권 소재 법원 계속 중인 사건은 55만원, 기타 지역 소재 법원 사건은 교통비 기타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여 110만원 정도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지원 절차]



나. 분석의견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 사업의 사업대상이 주로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써, 대법원 판례상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집행률도 매년 20~30%대에 불과하므로 사업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대리인²⁾ 선임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 건수를 170건으로 예상하여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2년도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등 사업 예산 편성내역]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170건 × 55만원 = 9,300만원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의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부당소송 소송지원에 대한 선임비 집행액은 2,475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편성된 9,300만원의 29.6%만을 집행하였다. 실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부당소송 소송지원 사업의 최근 5년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최소 1,323만원부터 최대 3,691만원으로 10~30%대의 집행률을 보여왔다.

2) 정부법무공단 또는 변호사

[최근 5개년간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지원 등 사업 수혜 인원]

(단위: 원)

연도	예산	구분	총지원액	사건	
				건당	지원액
2018	90,000,000	법관	31,240,900	24	1,302,000
		비법관	5,006,700	8	623,000
		계	36,247,600	24	1,133,000
2019	90,000,000	법관	31,959,400	32	999,000
		비법관	4,950,000	5	990,000
		계	36,909,400	37	998,000
2020	90,000,000	법관	16,500,000	21	787,000
		비법관	5,500,000	5	1,100,000
		계	22,000,000	26	846,000
2021	90,000,000	법관	8,250,000	9	917,000
		비법관	4,981,500	7	712,000
		계	13,231,500	16	827,000
2022	93,000,000	법관	19,800,000	17	1,164,000
		비법관	4,950,000	7	707,000
		계	24,750,000	24	1,031,0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관이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에 따라 2022년 법관에게 지원된 소송지원은 총 17건으로 전부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해당한다.³⁾

3) 실제 법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더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법관의 소송지원 신청으로 인해 지원받은 내역은 총 17건에 불과하다.

[2022년도 부당소송 소송지원 소송유형]

(단위: 건)

구 분	소송유형	건 수
법 관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17
	기타	0
	소 계	17
비법관	민원처리 불만	3
	업무상 과실	2
	불법행위	2
	소 계	7
합 계		24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자료: 대법원 판례(99다24218)

따라서, 민원인이 법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더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법관은 소송의 패소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이 동 판례를 인용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 상황으로 법률 전문가인 법관이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이에 따라 법관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⁴⁾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사업대상을 조정하여, 동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부당소송에 대비한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최대 3,7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8,500만원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험가입을 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1일자로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된 8,4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세목을 변경하였다.⁵⁾

[재판일반 경비지원 사업의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세목조정 증액			세목조정 감액			변경사유
	세부사업	세목	금액	세부사업	세목	금액	
2022. 08.01 .	재판일반 경비지원 (1143-404)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84	재판일반 경비지원 (1143-404)	일반수용비 (210-01)	△84	공공요금 및제세 부족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세목변경 등을 통해 “2022년 법원공무원 책임보험료”로 총 8,546만원을 집행⁶⁾하였는데, 동 책임보험은 민사소송 뿐 아니라 법관 등 법원공무원이 형사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여⁷⁾ 변호사선임료를 지원하는 보험이다.⁸⁾

4) 법관이 명백한 실수로 인해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내용을 법무부에서 알게 되고, 법무부 승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동 사업에 대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동 사업은 내내역사업으로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다른 내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의 일부와 같이 세목 변경되었다.

6) 보험 가입기간은 2022. 7. 18. ~ 2022. 12. 31.이다

7) 진정, 내사, 참고인 조사 등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도 선임료를 지원한다.

8) 동 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지원한 금액은 영업상의 비밀로 대법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공무원 책임보험료 집행내역]

(단위: 원)

집행일	지출액	비목	집행내역
2022-05-02	1,430,000	일반수용비 (210-01)	2022년도 법원공무원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원가계산 용역비
2022-08-02	84,000,000	공공요금및제 세(210-02)	2022년 법원공무원 책임보험료(법무-5046)
2022-08-19	30,000	일반수용비 (210-01)	나라장터 이용수수료(2022년 법원공무원 책 임보험계약)
계	85,460,0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당시 공무원 책임보험의 가입은 동 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사업변경을 하였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근 5개년간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간 약 1,300만원 ~ 3,7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반기(2022. 7. 18. ~ 2022. 12. 31.)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8,400만원을 집행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정제도 지원 사업¹⁾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종국적 사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122억 3,900만원 중 90.6%인 110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이하 ‘상근직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된 59억 600만원 중 5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조정제도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조정제도 지원	12,239	12,239	-	-	12,239	11,090	-	1,149	12,823
각급 법원조정 센터 운영	4,266	4,266	-	-	4,266	4,256	-	10	4,298
상임조정위원 수당	3,424	3,424	-	-	3,424	3,474	-	-	3,424
조정전담 변호사 운영	2,482	2,482	-	-	2,482	2,358	-	124	3,034

자료: 대법원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2

나. 분석의견

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이 회의의 참여 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 각급 법원에 상근하고, 겸직 제한을 받으며, 정액의 수당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110-02목)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의 조정위원은 비상근직인 “일반조정위원”과 상근직인 “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이하 ‘상근직 조정위원’)로 나눌 수 있다. 상근직 조정위원 제도는 법원에 상주하는 조정위원을 두어 조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12개 법원 조정센터에 34명의 상임조정위원이, 21개의 법원에 44명의 조정전담변호사가 각각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다.

상근직 조정위원인 상임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는 겸직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변호사 자격을 그 위촉 요건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상임조정위원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엄격하고,²⁾ 「민사조정법」상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스스로 조정절차를 종결할 수 있지만, 조정전담변호사는 이러한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

2)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② 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검사·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정위원회제도 개요]

구분	일반조정위원	상근직 조정위원	
		상임조정위원	조정전담변호사
자격요건 (변호사)	불요	필요 (판사·검사·변호사 등 의 직에 통산하여 10 년 이상 재직 등)	필요
근무형태	비상근	주 5일 상근	주 5일 상근
조정업무 수행 방식	- 비정기적·간헐적으로 조정업무 참여 - 조정담당판사 또는 수 소법원 조정장의 업무 를 보좌	- 조정담당판사와 동일 한 권한(조정절차 중 결권) 보유	- 조정절차를 대부분 주 관한 후 조정담당판사 에게 사무수행 보고
검직여부	가능	불가	

자료: 대법원

2022년도 상근직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집행현황을 보면 상임조정위원의 경우 34억 7,400만원, 조정전담변호사의 경우 23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총 5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상근직 조정위원 수당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예산	집행액	비고
상임조정위원	일반수용비 (210-01)	3,424	3,474	부족분은 일반조정위원 수당 내역 조정 사용
조정전담변호사 (상근조정위원)	일반수용비 (210-01)	2,482	2,358	
계		5,906	5,832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 상임조정위원 수당, 조정전담변호사 수당, 일반조정위원 수당은 세목이 모두 일반수용비(210-01)로 각급 법원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조정위원의 경우에는

각 조정사건의 참여 여부에 따라 건당 지급되고 있어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근직 조정위원의 수당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급 법원조정센터에 근무하는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제1항⁴⁾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고, 「민사조정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⁵⁾될 뿐만 아니라 급식수당, 교통지원수당,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임근무수당 등으로 법조경력 등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⁶⁾

[2023년 기준 상임조정위원 월 수당액]

(단위: 천원)

구 분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서울)
월 수당액	7,000	7,500	9,000	9,500	10,0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조정전담변호사 역시 직무수행법원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겸직이 제한되며, 조정사건 처리실적과 관련 없이 급식수당, 교통지원수당,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상임근무수당 등으로 재위촉여부에 따라 수당을 46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⁷⁾

4)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민사조정법」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조정위원규칙」

제6조 (일당 및 수당)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2023년 기준 조정전담변호사 월 수당액]

(단위: 천원)

구 분	신규위촉	재위촉(1차)	재위촉(2차)	재위촉(3차)
월 수당액	4,600	4,800	5,000	5,200

자료: 대법원 재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상근직 조정위원의 지위는 일시적 고용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등, 회의의 참여 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지침 상 세출과목 구분]

세목(내역)
210-01 일반수용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110-02 기타직보수 -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등의 보수

자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즉, 고용관계에 있는 상근직 조정위원의 수당은 인건비(110)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위원회 상근직(상임위원 및 간사)에 대한 보수를 “기타직 보수(110-02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기타직 보수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5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일당 및 수당)

-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가. 현 황

민간출연금¹⁾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수익의 일부를 출연받아 동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2022년도 계획액 1,015억 9,600만원 중 755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민간출연금 수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당초	수정			
민간출연금	101,596	101,596	101,596	75,530	74.3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공탁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의 대부분은 이러한 ‘민간출연금’이며, 그 외의 수입은 기금예탁금에 대한 회수액 및 이자수입액이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금 수입액	53,818	54,479	65,121	94,569	135,870	123,597	133,284
민간출연금	53,517	48,440	54,476	84,111	91,499	83,970	75,530
예탁금, 예치금 회수 등	301	6,039	10,645	10,458	44,371	39,627	57,754

자료: 대법원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사업서비스진흥기금 59-594

나. 분석의견

공탁출연금은 은행별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 마진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각 은행별 차이가 있어 은행별로 납부하는 공탁금 출연률²⁾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탁금 출연률이 높은 은행에 공탁금을 더 배분하는 형식의 공탁금 통합 운용 풀(Pool) 관리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은행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는 ‘공탁출연금’의 확정은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³⁾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동법 제19조(출연금)⁴⁾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⁵⁾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각 은행이 공탁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공탁자 등에게 지급할 이자와 은행의 포괄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이 공탁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탁금 잔액 대비 공탁출연금을 뜻한다.

3)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4) 「공탁법」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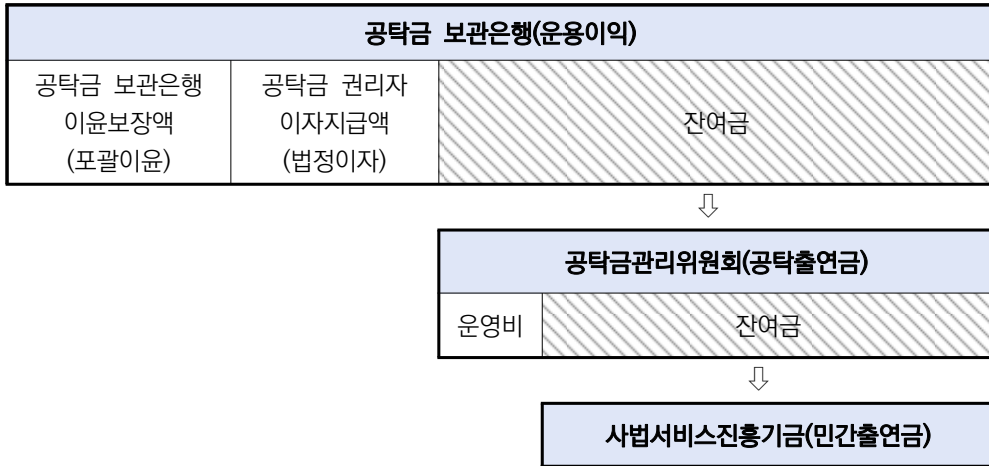
5)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탁금 수입의 기금 전입 과정]



공탁출연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공탁출연금은 각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 마진율⁶⁾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산식에 따르면, 각 은행별 자금운용수익률에서 순이자마진율을 제한 금액에 연동되어 공탁금출연금이 결정되는데, 순이자마진율이 결국 자금운용수익률에서 조달비용률⁷⁾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각 은행별 조달비용률에 따라 공탁출연금 및 민간출연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⁸⁾⁹⁾

[공탁출연금 산정 방식]

$$\text{공탁출연금} = \text{공탁금 운용수익금}^{1)} - \text{포괄이윤}^{2)} - \text{이자비용}^{3)}$$

- 1) 공탁금 운용수익금 = 은행별 공탁금 평균잔액 × 은행별 자금운용수익률
 - 2) 포괄이윤 등 = 은행별 공탁금 평균잔액 × 은행별 순이자마진율
 - 3) 이자율 = 0.35%(2018.7.1.~2020.7.1.), 0.1%(2020.7.1.~2022.9.30.), 0.35%(2022.10.1.)
- 단, 공탁출연금 중 당해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

자료: 대법원

6) 순이자 마진율은 자금운용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7) 조달비용에서 운용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8) 다만, 전년도 출연금 규모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한선 및 상한선(±30%)의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

9) 즉, 산식에 따르면 각 은행별 조달비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공탁금 수입이 결정된다.

2022년도 각 보관은행별 자금운용수익률을 보면 전북, 광주, 부산은행 등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순이자마진율은 제일, 하나, 신한은행이 낮은 순이자마진율을 보였다. 자금운용수익률에서 순이자마진율을 제외한 공탁출연금 기준수입률은 우리,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관은행별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마진율 현황]

(단위: %)

구분	신한	제일	우리	농협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자금운용 수익률(A)	2.32	1.87	2.33	2.38	2.36	3.04	2.60	2.79	2.62	3.49
순이자 마진율(B)	1.49	1.19	1.37	1.60	1.41	2.31	1.85	1.95	1.85	2.65
공탁출연금 기준수입률 (A-B)	0.83	0.68	0.96	0.78	0.95	0.73	0.75	0.84	0.77	0.84

주: 공탁출연금 기준수입률에서 공탁이자율까지 제외하면, 공탁출연금을 납부하는 기준율이 됨
자료: 대법원

현재 공탁금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보관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관은행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¹⁰⁾에 따라 보관은행에 대한 지정심사를 통해 지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를 통해 5년을 기간으로 하여 공개경쟁방식¹¹⁾을 거쳐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있고, 보관은행이 지정되면 해당 법원의 공탁금은 그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탁금의 효율적인 배분에 의한 기금 수입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보관은행 지정·적격 심사) 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등의 심사기준에 의해 지정된다.

최근 3개년 간 보관은행별 공탁금평균잔액 대비 기금에 최종적으로 출연된 금액의 비율을 보면, 2020년의 경우 0.59%~1.12%, 2021년의 경우 0.64~1.08%, 2022년의 경우 0.4~0.86%까지의 편차를 보였다. 즉, 보관은행별로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사례도 있어 공탁금을 어느 보관은행에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의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최근 3개년간 보관은행별 민간 출연률 현황]

(단위: 백만원, %)

보관은행	2020			2021			2022		
	공탁금 평균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공탁금 평균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공탁금 평균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신한	6,333,864	70,939	1.12	6,778,960	63,674	0.94	7,696,264	56,183	0.73
제일	508,149	5,016	0.99	507,324	4,013	0.79	437,546	2,553	0.58
우리	322,629	3,218	1.00	353,628	3,468	0.98	377,351	3,245	0.86
농협	382,823	2,806	0.73	467,318	3,367	0.72	611,846	4,161	0.68
하나	302,308	1,882	0.62	160,443	1,730	1.08	197,219	1,676	0.85
광주	165,046	1,236	0.75	159,545	1,241	0.78	191,812	1,208	0.63
대구	284,801	2,326	0.82	283,036	2,392	0.85	304,188	1,977	0.65
부산	141,232	1,519	1.08	169,249	1,517	0.90	266,556	1,854	0.70
경남	242,162	2,245	0.93	269,881	2,286	0.85	342,735	2,296	0.67
전북	44,629	262	0.59	48,786	314	0.64	94,728	377	0.40
합계	8,727,643	91,449	1.05	9,198,170	84,002	0.91	10,520,245	75,530	0.72

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산정은 전년도 평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현재의 법원별 별도의 보관은행 지정시스템을 변경하여, 공탁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적격 심사를 거친 은행을 대상으로 공탁금을 배분하며, 매년 출연률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가감하여 재예치하는 배분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직관적으로는 각 은행별 조달비용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더 큰 기금 수입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각 은행별로 공탁금 예치액의 최소한도만을 설정하고, 전년도 출연률에 따라 차등하여 공탁금의 예치액을 가감하는 형식의 성과주의 시스템에 따라 공탁금을 재배분한다면, 사업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인 민간출연금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공탁금관리시스템이 각 보관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자체적인 시스템만으로는 공탁금의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의 자체적인 공탁금 및 보관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¹³⁾, 시스템을 구축하면 출연률에 따라 공탁금을 재예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행 법원에 입점한 은행은 공탁금의 보관 및 지급역할이 아닌 단순한 입출금에 가까운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등 사업¹⁾은 학·석사 등 학위과정 지원을 통한 사법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12억 7,600만원 중 94.4%인 1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2,111	12,111	70	△94	12,087	11,102	843	142	11,203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1,998	1,998	70	△29	2,039	1,934	60	45	2,144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등	1,206	1,206	70	-	1,276	1,138	60	7	1,35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아니하고 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무분야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퇴직자 방지를 위한 선발 절차개선과 타 위탁교육훈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교육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부터 법원 일반직공무원(5급 이하, 8급 이상) 가운데 매년 최대 2명을 선발하여 국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법학전문석사학위 과정에 3년간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외부기관 위탁교육 훈련 제도²⁾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 사업을 통해,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8,60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대법원은 변화된 법학교육체계에 따른 법학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계발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 정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이 필요한 사법보좌관³⁾으로서도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의 직무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로스쿨 위탁교육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⁴⁾

그러나, 현재 중앙행정부처에서는 로스쿨 위탁교육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⁵⁾과 2022년까지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은 6명의 법원 공무원 중 이미 2명이 퇴직하여 법원 공무원의 직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동 사업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비 지원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인 6년 이내에 퇴직하면 전액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은 퇴직자에게 지급된 학비 지원금은 반납받았으나, 위탁

2) 법원공무원은 개별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후 로스쿨에 합격하여야 하고, 법원은 로스쿨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3) 재판업무 중 정형적(비송)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를 법관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4) 이미 동 위탁교육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

5) 법무부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검찰수사관 3명을 선발하여 로스쿨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반납받지 못하였다.⁶⁾

실제 학비지원금에 비하여 급여가 약 5배~10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비 지원금 반납만으로는 사실상 의무복무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사실상 복무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로스쿨의 위탁교육의 경우 기타 학위 과정에 비하여 위탁교육 기간을 3년⁷⁾으로 하는 특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학위취득 위탁교육과 같이 위탁교육기간을 2년으로 하고, 나머지 1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7호⁸⁾의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무급휴직 후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위탁교육자의 퇴직여부 현황]

(단위: 원)

교육기간	성명	지출액		변호사자격 취득여부	퇴직여부
		급여	총 학비 지원금		
2016~2019	○○○	145,007,080	14,404,500	취득	
2016~2019	○○○	146,394,500	17,573,500	취득	
2017~2020	○○○	111,901,050	11,295,000	취득	
2017~2020	○○○	103,252,500	12,690,000	취득	
2019~2022	○○○	99,612,830	20,508,500	취득	퇴직
2019~2022	○○○	66,249,480	9,956,000	취득	퇴직
계		506,555,130	76,471,500		

자료: 대법원

6) 위탁교육은 직무상 훈련으로 훈련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7) 위탁교육은 일반적으로 2년의 과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8)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로스쿨 교육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고, 학비도 별도로 지원하여 전문교육으로 양성한 인력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은 로스쿨 위탁교육생 선발 시 장기근속 의향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⁹⁾를 받는 등의 방안¹⁰⁾, 타 위탁교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방안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의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9)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탁교육 선발인력의 자체적인 검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 가능하다면 교육기간 중 급여 환수와 관련된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판활동지원비 사업¹⁾은 재판활동 및 재판자료 수집 등을 위한 재판활동지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2022년도 예산현액 146억 1,700만원 중 146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재판활동지원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일반경비 지원	40,209	39,799	85	416	40,300	39,696	63	540	40,376
재판활동 지원비	14,617	14,617	-	-	14,617	14,611	-	6	14,79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법원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동 사업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는 각급 법원 및 소속 기관에 배분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재판활동지원비(특정업무경비) 집행에 있어 개인별 지급 잔액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없는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업무경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재판활동지원비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① 법관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판례자료 수집비, ② 재판활동을 하는 법관과 사법보좌관, 재판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재판활동비로 나뉘어져 있다.

2022년도 대법원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동 특정업무경비는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① 판례자료 조사수집비의 경우 직급별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며, ② 재판활동비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단위-세부사업)	특정업무경비명	예산액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재판청구권 실현 - 재판일반경비지원	1. 판례자료 조사수집비	7,390,400	【개인별 지급】 가. 법관 ○ 대법원장: 200천원/월 ○ 대법관: 200천원/월 ○ 법원장: 150천원/월 ○ 15호봉 지법부장 이상 법관: 120천원/월 ○ 법조경력 10년 이상: 110천원/월 ○ 법조경력 10년 미만: 100천원/월 나. 일반직 ○ 1급: 120천원/월 ○ 2급: 110천원/월 ○ 3급: 80천원/월 ○ 4급: 70천원/월 ○ 5급: 60천원/월 ○ 6-7급: 50천원/월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단위-세부사업)	특정업무경비명	예산액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2. 재판활동비	7,227,000	【개인별 지급】 ○ 고등부장: 180천원/월 ○ 고법판사: 180천원/월 ○ 지법부장: 180천원/월 ○ 지법판사: 180천원/월 ○ 사법보좌관(부이사관): 180천원/월 ○ 사법보좌관(서기관): 120천원/월 ○ 재판연구원: 150천원/월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정업무경비²⁾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경비와 일 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경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동 사업에 대해 개인활동경비로만 집행하였다는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정부구매키타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개인활동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부서활동경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대법원이 제출한 재판활동지원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특정업무경비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개인활동경비	기타	
1. 판례자료 조사수집비	7,390,400	7,513,725	-	-
2. 재판 활동비	7,227,000	7,098,096	-	5,579

주: 1. 기타는 개인별 지급액 외 집행액

2. 대법원에 따르면, 판례자료조사수집비는 신규임용, 휴가, 복직, 퇴직 등 인력 수급에 따라 집행 소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되었다고 함.

자료: 대법원

2)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활동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재판활동 및 사법행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재판 자료 조사 활동에 사용하였다고만 밝히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³⁾에 대해서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집행 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고, 기재 내용이 특정 업무수행과 무관할 경우,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이 지켜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개인활동경비 이외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방법」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이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실제, 2022년도 재판활동지원비 사업에서 개인활동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조사활동을 위해 “(주)○○○○스토어”에서 7회에 걸쳐 총 946만원을 집행한 것은 주류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사용처가 “○○○○(주)e커머스 사업본”인 곳은 집행내역에 재판자료 조사활동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총 413만원을 50만원 내에서 9회로 나누어서 결제한 것으로 보이며⁴⁾, 이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⁵⁾

3) d-Brain 시스템 상 출력이 가능한 지출부, 지급부, 수입부의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4) 동 집행내역은 실제 구매일이 아닌 카드 결제일이므로 같은 날 구매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월 2회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주 내에 같은 사용처에서 구매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5)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집행의 경

사용처가 “○○○○○○호텔서울”인 곳 역시 “재판자료 조사활동” 등으로 포괄적으로 집행내역이 작성되어 있으나, 대법원 인근에 있는 호텔의 뷔페에서 오찬 등을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도 재판활동지원비 잔액 집행내역 요약]

(단위: 원)

사용가맹점	건명	구매횟수	총 지급액
(주)○○○○스토어	법정연행컨설팅 관련 자료조사활동 등	7회	9,464,300
○○○○(주)e커머스사업본	재판자료 조사활동 등	9회	4,135,030
○○○○○○호텔서울/(주)○○○○ ○○○○	재판제도 개선 관련 자 료조사활동 등	9회	6,209,0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대법원은 재판활동지원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①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개인별 지급되는 개인활동경비만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 집행잔액을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하였으며, ② 그 부서활동경비의 집행내역 역시 적절하지 않은 사용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① 추후 예산집행에 있어 개인활동경비 지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②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우 규정이 있으나,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관행적으로 50만원 이하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¹⁾은 민간법률 구조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2022년 계획현액 30억 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006	3,006	-	3,006	3,006	-	-	-	3,006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게 각 26억 7,500만원, 1억 6,600만원, 1억 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각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단체	보조금 총액	1차		2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대한법률구조공단	2,675	2022.02.14.	1,338	2022.08.04.	1,338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166	2022.01.28.	83	2022.08.04.	8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5	2022.02.09.	83	2022.08.23.	83

자료: 대법원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사업서비스진흥기금 1161-303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미흡하여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불인정 처리 없이 보조금 전액을 확정하는 등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의 용도 외 사용금지²⁾,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금지³⁾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⁴⁾은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교부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제3호⁵⁾은 보조사업자가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별지 3]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예시”와 같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예시]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인건비 (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계좌이체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소계		X,XXX,XXX		
여비 (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 장 숙박비	현금지급
					보조사업비 카드
	소계		xxx,xxx		
.....					
합 계			X,XXX,XXX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지 3]

그러나, 동 사업 보조금의 89%를 교부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작성지침’ 상의 예시와는 다르게 사용 목적을 단순히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적시하고, 지급방식도 명시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보조금 전액인 총 2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산보고서 상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22년 02월 18일	668,750,000	무료법률구조 사업비
		2022년 03월 17일	668,750,000	무료법률구조 사업비
		2022년 08월 16일	1,337,500,000	무료법률구조 사업비
소계			2,675,000,000	
합계			2,675,000,000	

* 참고 : 운영세목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세목이 운영세목으로 표시됩니다.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6)에 따라 보조금 집행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일자별 집행내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실제 국고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여 집행내역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7)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8)에 따르면 3억 이상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해야하는 회계법인 역시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반하는 이러한 미흡한 정산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검증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상 회계법인 검증결과]

□ 검증결과			
제목	감사보고서	검증일자	2023년 02월 27일
검증기관	회계법인	검증자	
검증의견	적정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p.3

이러한 미흡한 검증으로 부적합한 집행내역이 있으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보조비목별로 불인정금액” 내역을 명시하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예시]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 (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급 인건비
					
	소계			x,xxx,xxx	
여비 (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참여인원의 출장비
					
	소계			xxx,xxx	
.....					
합 계				x,xxx,xxx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3]

9) 대법원은 회계법인이 실제 검증 시에는 상세 집행내역을 검증한다는 입장으로 회계법인의 적정 검증의견에 따라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일자별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미흡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승인하고, 관행적으로 보조금 전액을 보조금액으로 확정하여 오는 등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이 검증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교체 협의를 하는 등¹⁰⁾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검증기관에 대해 대법원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

I 결산 개요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억 8,000만원이며,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80	480	480	45	45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28억 6,200만원이며, 이 중 94.7%인 500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3,145	52,862	52,862	50,072	-	2,790	94.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자산은 2,118억 5,200만원, 부채는 40억 9,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77억 5,5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600만원, 일반유형자산 2,052억 6,400만원, 무형자산 59억 6,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억 1,700만원(0.6%)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유형자산의 증가 5억 4,000만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4억 8,200만원, 장기차입부채 26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500만원(1.1%) 증가하였다. 이는 미지급비용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3,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A)	2021회계연도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11,852	210,535	1,317	0.6
Ⅰ. 유동자산	16	476	△460	△96.6
Ⅱ. 투자자산	-	-	-	0.0
Ⅲ. 일반유형자산	205,264	204,724	540	0.3
Ⅳ. 무형자산	5,965	5,329	636	11.9
Ⅴ. 기타비유동자산	608	6	602	10,033.3
부 채	4,098	4,053	45	1.1
Ⅰ. 유동부채	1,482	1,446	36	2.5
Ⅱ. 장기차입부채	2,615	2,607	8	0.3
Ⅲ. 장기충당부채	-	-	-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0.0
순 자 산	207,755	206,482	1,273	0.6
Ⅰ. 기본순자산	93,090	93,09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895	△3,168	1,273	△40.2
Ⅲ. 순자산 조정	116,560	116,560	-	-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537억 1,200만원이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537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89억 600만원(26.0%) 감소한 537억 1,200만원이며, 이는 재평가손실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89억 5,7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3,758	72,715	△18,957	△26.1
II. 관리운영비	-	-	-	0.0
III. 비배분비용	-	-	-	0.0
IV. 비배분수익	45	96	△51	△53.1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53,712	72,618	△18,906	△26.0
VI. 비교환수익 등	-	-	-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53,712	72,618	△18,906	△26.0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2,064억 8,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77억 5,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억 7,300만원(0.6%)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06,482	203,135	3,347	1.6
II. 재정운영결과	53,712	72,618	△18,906	△26.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4,985	53,327	1,658	3.1
IV. 조정항목	-	22,638	△22,638	△100.0
V. 기말순자산(I-II+III+IV)	207,755	206,482	1,273	0.6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본부기본경비, ③ 본부운영지원, ④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⑤ 국제교류, ⑥ 재판자료확충 사업이 있다.¹⁾

인건비는 1억 2,000만원이 감액(314억 → 312억 8,000만원)되었고, 본부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에서 500만원(64억 4,000만원 → 64억 3,500만원), 본부운영지원은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사업에서 200만원(38억 5,000만원 → 38억 4,8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은 헌법재판연구활동 사업에서 1,000만원(18억 7,800만원 → 18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AACC 연구·조사 사업에서 100만원(5억 8,500만원 → 5억 8,400만원), 재판자료확충에서는 간행물 발간 예산에서 1,000만원(4억 1,600만원 → 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다.

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헌법재판소는 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②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행정서비스 제고, ③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제도·업무인프라 개선, ④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관서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일괄하여 지급처리하거나 사용건별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집행 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관서업무추진비의 지급 내역을 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간행물의 수량 및 단가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각종 발간물의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발간물 간행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가. 현황

본부기본경비 사업¹⁾과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²⁾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소규모 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의 경우 관서업무추진비(240-02)로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4억 4,3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에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관서업무추진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기본경비	6,435	6,346	-	-	6,346	5,680	-	666	6,50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66	443	-	-	443	435	-	8	466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63	451	-	-	451	408	-	43	46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6	44	-	-	44	39	-	5	4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11-250

2) 코드: 일반회계 1011-251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는 관서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일괄하여 지급처리하거나 사용건별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집행 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관서업무추진비의 지급내역을 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2개 세부사업에 관서업무추진비(240-02)로 편성된 예산 총 4억 8,700만원 중 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관서업무추진비의 처리방식을 살펴보면, 관서업무추진비를 개별 사용건별로 그 내역을 기재하여 처리하지 않고 월별로 일괄하여 지급처리하거나 사용건별로 지급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서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상·하반기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및 경비 집행 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구체적인 집행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³⁾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방식이다.

3)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6

2-4. 경비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자금지출,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경비집행시(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 오찬비용('00년0월0일, 000원)

[헌법재판소 관서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예시(2022.1.~2022.11.)]

(단위: 원)

지급일자	세부사업	수령인	건명	지급액
2022. 02.10.	본부기본경비	신한 비씨 (주)	관서업무수행경비 1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6,964,390
2022. 02.10.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연구지원 및 지도교수활동비 1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737,500
2022. 11.28.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연구지원 및 지도교수활동비 11월 상반기 카드청구액	2,409,500
2022. 12.12.	본부기본경비		관서업무수행경비 11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24,903,158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관서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처리하지 않고 건별로 이를 처리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서업무경비 카드청구액’ 또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카드청구액’으로 일괄 기재하여 그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서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예시(2022.12.)]

(단위: 원)

지급일자 ¹⁾	세부사업	사용 가맹점	건명	지급액
2022. 13.10.	본부기본경비	○○ 호텔	관서업무수행경비 12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2,674,000
2022. 13.10.	본부기본경비	△△ 식당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12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3,445,000

주: 1) 2022년 12월 집행되었으나, 정부구매카드 대금의 지급이 다음 해 이루어지는 경우
‘2022.13.10.’과 같이 표기됨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관서업무추진비의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각 사용건별로 그 세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재판자료확충 사업¹⁾은 헌법논총, 헌법재판자료, 헌법재판소판례집 등 헌법재판 관련 각종 서적 및 자료 등을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 4억 600만원 중 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재판자료확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자료확충	406	406	-	-	406	367	-	39	42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간행물의 발간분량이 적게 나타남에 따라 각종 발간물의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발간물 간행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2022년도 예산 4억 600만원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자료집, 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등 각종 발간물의 간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로 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5-306

[2022년도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2								2023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7	7	-	-	7	7	-	-	7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발간	15	15	-	-	15	9	-	6	14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발간	9	9	-	-	9	6	-	3	9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40	40	-	-	40	31	-	9	37
헌법재판자료집 발간	2	2	-	-	2	-	-	2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6	36	-	-	36	29	-	7	32
헌법논총 발간	30	30	-	-	30	20	-	10	27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50	50	-	-	50	49	-	1	50
합 계	189	189	-	-	189	151	-	38	17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그런데 헌법재판소 발간물 간행 관련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 1억 8,900만원 중 1억 5,100만원만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하여(집행률 80.0%)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비용의 집행부진 및 불용 문제는 발간비용을 구성하는 간행비와 원고료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행물 발간비의 집행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2022년도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간행물	2020			2021			2022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10,260	9,427	91.9	7,020	6,962	99.2	7,020	7,018	100.0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수록	18,395	11,553	62.8	16,800	8,204	48.8	15,400	8,811	57.2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6,574	5,522	84.0	6,600	5,180	78.5	6,600	4,851	73.5
헌법재판소 판례집	59,818	40,220	67.2	44,220	25,308	57.2	40,040	30,848	77.0
헌법재판 자료집	5,854	1,936	33.1	1,620	1,161	71.7	1,620	-	0.0
헌법재판소 공보	42,179	24,981	59.2	36,900	30,921	83.8	33,600	26,642	79.3
헌법논총	7,800	3,837	49.2	6,600	3,641	55.2	5,500	5,743	104.4
합 계	150,880	97,476	64.6	119,760	81,377	68.0	110,140	83,913	76.2

자료: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비 집행률은 2020년 64.6%에서 2022년 76.2%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그 집행률이 낮은 수준이며,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수록 발간비의 경우 집행률이 57.2%로 나타나는 등 일부 발간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과다 계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간행물 제작 및 발간을 위한 원고료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의 경우 편성된 원고료 288만원 중 74만 2,000원만 집행되었고, 헌법논총의 경우 편성된 원고료 2,000만원 중 1,050만원만 집행되었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간행물 원고료 집행 현황]

간행물	편 성	집 행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880천원(4,500원×640P)	742천원(4,500원×164P)
헌법논총	20,000천원 (2,000천원×10종)	10,500천원 (2,500천원×1종, 2,000천원×4종)

자료: 헌법재판소

이와 같이 발간비 및 원고료의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예산 계상 시 발간물의 권당 면수와 원고료 지급 대상 원고의 종류 및 분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간행물 관련 예산 집행부진 사유]

간행물	집행부진 사유	편 성	집 행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간행물 분량 과다 산정	1,100면	622면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원고료 지급대상 분량 과다 산정	640면	164면
헌법논총	원고료 지급 논문 수 과다 산정	10편	5편

자료: 헌법재판소

물론, 간행물의 경우 실제 발간 과정에서 그 분량 및 구성 등의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된 예산과 다르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경우 연례적으로 간행물 발간 관련 예산의 불용이 나타나고 있고, 집행부진 사유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산정한 간행물 분량 등과 실제 집행 내역의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과거 연도의 간행물 발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발간 비용의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713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2983-2713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